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696호, 제3697호, 제3698호
- 다. 제출일자 : 2026. 5. 26.
- 라. 회부일자 : 2026. 5. 27.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 산 개 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334,851	334,851	358,436	335,648	810	21,979	93.6

- 세입예산현액은 3,348억 5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584억 36백만원이 정수결정되어 이 중 93.6%인 3,356억 48백만원을 수납하고 8억 10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219억 79백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622,350	2,821	71,931	34 (-34)	174 (-174)	68,553 (-68,553)	697,102	690,802	1,868	-	1,868	0.13	4,432 (0.6%)

- 예산액 6,223억 5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1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19억 3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71억 2백만원으로, 이 중 99.1%인 6,908억 2백만원을 지출하고 0.3%인 18억 6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4억 3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34백만원으로,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업에서 발생함.
- 변경
 - 예산 변경은 4건에 1억 74백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 등에서 발생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3건에 719억 31백만원으로, ‘강변북로 확장공사 입찰취소에 따른 설계보상비’ 159억 5백만원, ‘토지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404억 90백만원,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금’ 155억 36백만원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31건에 685억 53백만원으로, ’2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지하안전과)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맞추어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등의 사업을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9건에 18억 6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971억 2백만원 대비 0.3%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4억 32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6,971억 2백만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5	697,102	4,432	0.6	
2024	466,620	3,317	0.7	
2023	471,988	4,185	0.9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정산잔액 : 130천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억 35백만원
- 낙찰차액 : 4억 9백만원
- 지출잔액 : 37억 87백만원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8,645	8,645	19,405	19,405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86억 45백만원이고, 194억 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4억 5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25,823	13,353	-	-	50 (-50)	-	39,176	30,449	8,673	-	8,673	-	54 (0.1%)

- 예산액 258억 2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3억 5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1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77.7%인 304억 49백만원을 지출하고 22.1%인 86억 7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건에 50백만원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2구간)’ 사업에서 발생함.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8건에 86억 7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91억 76백만원 대비 22.1%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91억 76백만원 대비 0.1%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5	39,176	54	0.1	
2024	25,505	17	0.1	
2023	27,008	5,433	20.1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54백만원

다 .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3,250	6,793	6,793	6,793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67억 93백만원이고, 67억 9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7억 93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3,250	3,543	-	-	-	-	6,793	3,337	-	-	-	3,437	19 (0.3%)

- 예산액 32억 5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4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93백만원으로 이중 49.1%인 33억 37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없음.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67억 93백만원 대비 0.3%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응 룰 (%)	비 고
2025	6,793	19	0.3	
2024	10,710	186	1.7	
2023	11,817	3,874	32.8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19백만원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149,668	149,668	147,454	147,454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1,496억 68백만원이고, 1,474억 5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4억 54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714,093	80,032	703	-	4,582 (-4,582)	64,037 (-64,037)	794,828	695,463	81,390	20,524	60,866	6	17,969 (2.3%)

○ 예산액 7,140억 9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억 32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억 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48억 28백만원으로 이중 87.5%인 6,954억 63백만원을 지출하고 10.2%인 813억 90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79억 69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7건에 45억 82백만원으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9억 40백만원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7억 42백만원
 - 성동교 확장 4억 88백만원 등임.
- 예비비 : 예비비사용은 2건에 7억 3백만원으로
 - 울곡로 창경궁앞 도로개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5억 90백만원
 - 금호로 확장공사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1억 13백만원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15건에 640억 37백만원으로, '2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지하안전과)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맞추어 '지반침하 예방', '시도 보도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0건에 205억 24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3건에 608억 66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7,948억 28백만원 대비 10.2%인 813억 90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79억 6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7,948억 28백만원 대비 2.3%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5	794,828	17,969	2.3	
2024	813,738	26,795	3.3	
2023	973,032	41,000	4.2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11천원
- 예산절감액 : 80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7억 91백만원
- 낙찰차액 : 130억 61백만
- 지출잔액 : 30억 37백만원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 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 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본 경비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5	1425,536	41,414	380,424	-	339,500	23,745	631,601	8,852	1,425,536	294,901	583,544	15	339,500	150,000	-	57,576
2024	1076,717	72,609	228,373	-	-	31,713	716,092	27,930	1,076,717	374,744	631,601	11	-	-	28,947	41,414
2023	1031,653	29,872	221,659	-	-	32,645	686,071	61,406	1,031,653	221,626	716,092	11	-	11,503	9,812	72,609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804억 24백만원, 이자수입 237억 45백만원, 예치금회수 6,316억 1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414억 14백만원, 차입금 3,395억원, 기타 보조금반환수입 88억 52백만원을 합한 1조 4,255억 36백만원이며,
-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 2,949억 1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75억 76백만원, 예탁금 3,395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00억원, 기본경비 15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835억 44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 . 도로 굴착 복구 기금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산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5	84,673	1,115	-	1,288	40,646	-	41,624	84,673	50,108	34,354	-	211
2024	83,382	1,027	-	1,310	31,727	-	49,318	83,382	41,621	40,646	-	1,115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15백만원, 이자수입 12억 88백만원, 예치금회수 406억 46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16억 24백만원을 합한 846억 7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59.2%인 501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43억 54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억 11백만원은 감리비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함.

4. 검 토 의 견

가 .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334,851	334,851	358,436	335,648	810	21,979	93.6%
2024	172,085	172,085	234,283	214,650	625	19,008	91.6%
2023	172,196	172,196	198,385	176,017	2,123	20,245	88.7%

가) 개 요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48억 51백만원이었으나 실제 3,584억 3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3.6%인 3,356억 48백만원이 수납되고 8억 10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219억 79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3,584억 36백만원)의 경우 예산액(3,348억 51백만원) 대비 107%로 총 235억 85백만원이 증가했는데,
 -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6억 3천만원이

증가하고 ‘기타사업수입’ 24억 9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외수입’ 97억 4백만원이 증가하고 ‘위탁비
반환수입’ 17억 8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그 밖에 ‘변상금’이 40억 99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난연도
수입’이 145억 85백만원 증가함에 따른 것임([표] 참조).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8,859	53,489	52,536	4,630	○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광고·부대수입) '26년 지하도상가 임대료 일부 선납 및 광고 신규입찰 추진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214-05 기타사업수입	14,496	12,087	11,136	△2,409	○ (공동구 관리비) 세입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추계 편성하였으며, '25년 공동구 관리 운영 세출예산에 대해 선 징수하되 전년도 초과 징수액만큼 감액하여 징수결정함으로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5,403	3,617	3,617	△1,786	○ (서울시설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편성시 대행사업비 예상 편성액에 최근 3년간 편성액 대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대행사업비 예상 편성액과 실제 편성액 간 차이 및 평균 징수율과 실제 징수율 간 차이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224-07 그외수입	14,678	24,382	21,337	9,704	○ (변상금 징수교부금 환수) 송파구 시설물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로 점용허가 취소판결에 따라 변상금 징수교부금이 환수되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233-01 변상금	2,437	△1,662	△2,405	△4,099	○(도로 변상금) 예산편성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추계 편성하였으며, 송파구 시설물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로 점용허가 취소판결에 따라 변상금이 환급되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감소 ○(지하도상가 변상금) 예산 편성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추계 편성하였으며, 실제 임차인의 무단점유권이 증가함으로써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
지난연도 수입					
241-01 지난연도 수입	4,472	19,057	4,513	14,585	○(사용료·도로점용료·도로변상금 체납징수액) 체납자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납부 독려 시행으로 지난연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결정액 증가

- 편성목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광고 및 부대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 계약만료로 공실 상태였던 잠실광장 점포의 신규 입찰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19억 66백만원), 터미널상가의 2026년도 임대료 일부 선납(37억 54백만원), 신규 입찰 추진에 따른 광고수입 증가(36억 43백만원) 등의 요인이 있었으나,
 - 강남역 상가 신규 입찰 유예 및 지하도상가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47억 4백만원) 등의 영향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공동구 관리비 수입에 해당하는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144억 9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20억 87백만원으로 24억 9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반면, 실제 징수액은 당해연도 공동구 관리·운영에 소요된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른 것임.
 - 다만, 서울시는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 간 과도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회계연도부터는 기존의 세출예산 기준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최근 5년간 실제 징수액 평균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변상금’은 예산액 24억 37백만원 대비 환급액이 징수액을 초과함에 따라 순징수결정액이 △16억 26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24억 37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주)롯데물산) 소유 시설물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기납부 변상금 48억 26백만원을 환급하게 되어 예산액과 큰 차이가 발생한 것임.
- 마지막으로,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액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인 ‘지난연도수입’은 예산액 44억 72백만원

대비 426.2%인 190억 57백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 이는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징수율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산정하는 반면, 징수결정액은 해당 연도 체납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것임.

다) 미수납액

-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219억 79백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9억 54백만원
- 도로사용료	23억 40백만원
- 기타사용료	22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9억 51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27백만원
- 불용품매각대금	9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6백만원
- 그외수입	30억 45백만원
- 변상금	7억 44백만원
- 기타과태료	82백만원
- 부담금	2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	137억 34백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9억 54백만원으로 전년도 7억 7백만원 대비 2억 47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하도상가 임

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 및 체납 증가에 기인한 것임.

- 특히, 미수납액 규모는 2024회계연도에 이어 금회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체납 증가를 방지하고 세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은 2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19억 92백만원 대비 3억 4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 및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기 내 완납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것임.

- 특히,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은 75억 5천만원(34.4%), ‘무재산’에 따른 미수납액은 36억 88백만원(16.8%)으로,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219억 79백만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미수납 원인으로 확인됨.

-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강화, 채권 확보 및 재산압류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표] 참조).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21,978,683	100%
	무재산	3,688,095	16.8%
	행방불명	180,791	0.8%

납세태만	7,550,234	34.4%
폐업 또는 부도	753,903	3.4%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67,864	0.3%
격리 또는 입원	-	-
소송계류	-	-
국외이주	65,063	0.3%
자금압박	4,281,639	19.5%
기타	2,763,411	12.5%
납기미도래	2,627,683	12.0%

라) 정리보류

-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정리보류 총액은 8억 10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난연도 수입 8억 10백만원

-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액이 각각 전체의 61.2%와 23.7%를 차지하여 전체 정리보류액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 정리보류는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징수가 어려운 채권을 세입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보 측면에서는 재정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무재산을 사유로 한 정리보류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변동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산조사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고 향후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정리보류는 체납채권의 장기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만큼, 체납 초기 단계에서의 독촉, 재산조회, 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효 완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리보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납채권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 시효관리 체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세입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일반회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정리보류		809,770	100%
	배분금액 부족	-	-
	체납처분 중지	11,230	1.4%
	소멸시효 완성	495,382	61.2%
	행방불명	-	-
	무재산	191,822	23.7%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	-
	국세정리보류	-	-
	평가액 부족	4,045	0.5%
	기타	107,291	13.2%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622,350	2,821	71,931	34 (-34)	174 (-174)	68,553 (-68,553)	697,102	690,802	1,868	-	1,868	0.13	4,432 (0.6%)
2024	462,476	3,833	312	38 (-38)	79 (-79)	60,507 (-60,509)	466,620	460,460	2,821	-	2,821	22	3,317 (0.7%)
2023	449,979	1,765	20,244	215 (-215)	104 (-104)	3,095 (-3,095)	471,988	463,878	3,833	1,131	2,702	92	4,185 (0.9%)

가) 개 요

- 예산액 6,223억 5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21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19억 3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71억 2백만원으로, 이중 99.1%인 6,908억 2백만원을 지출하고 0.3%인 18억 6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4억 3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도로부지 실태조사’ 등 5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30	7	23	75.4%
2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46,450	44,828	1,622	3.5%
3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587	2,170	417	16.1%
4	도로시설과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	517	282	235	45.5%
5	도로시설과	공동구 관리 위탁	13,354	13,018	335	2.5%

○ 먼저, ‘도로부지 실태조사’ 사업은 무단 점용지 및 민원유발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부지에 측량비를 지원하여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 및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3천만원 중 75.4%인 2천 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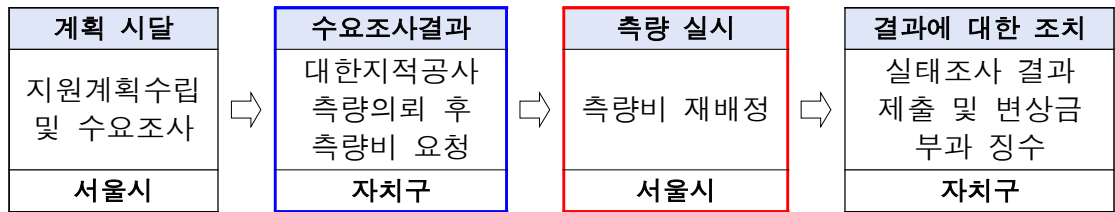
- 이는 「도로법」 제72조¹⁾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점용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실태조사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관내 4개 자치구(강북, 광진, 양천, 종로)에서 단 7개 필지에 대한 측량비 지원을 신청함에 따른 것임.

1)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그림]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사업 추진절차

- 동 사업은 그간 결산 때마다 높은 불용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당해연도 예산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용률이 75%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여짐.

[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건수(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5년	7	30	7 (24.6%)	23 (75.4%)
2024년	1	40	9 (22.5%)	31 (77.5%)
2023년	6	40	5 (11.8%)	35 (88.2%)
2022년	29	50	18 (36.9%)	32 (63.1%)
2021년	12	53	26 (49.0%)	27 (51.0%)
평균	11	42.6	13 (30.5%)	29.6 (69.5%)

- 더욱이 동 사업이 도로 무단점용 필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원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 자체평가²⁾에

2) 「25년 市도로 실태조사 측량비 지원 결과 보고」, 도로관리과-366호(2026.1.7.)

< 사업 평가 >

◆ 【 총 평 】

- (성 과) 서울 市도로 점용료, 변상금 등 세원발굴 및 세입 증대 노력
 - (실적) 4개(강북, 광진, 양천, 종로) 자치구 7개 필지
- (홍보부족) 市도로점용 관련부서 측량비 지원사업 자치구 직원 미 인지

◆ 【 개선점 】

- 자치구 市도로 실태조사 측량비 지원사업 미 인지 ※ 무단점용, 변상금, 경계부지 등
 - 도로점용허가 부서를 제외한 그 외 부서 市 도로 측량비 지원사업 홍보 부족
- 사업예산 분기별 집행실적 부진
 - 자치구 도로점용 담당자 연간 1회성 지원사업으로 인지
 - 상시(수시) 지원사업으로 자치구에서 당해연도 하반기 실태조사 측량비 신청

서 측량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 주체인 자치구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거나 예산편성 전 실효성 있는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지하도상가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장비로 교체하여 냉난방 효율 향상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5억 17백만원 중 45.4%인 2억 3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종각지하도상가의 노후(2013년식)된 흡수식냉온수기 2대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50%)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국비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국비(2억 35백만원)³⁾가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으로 직접 배정·지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교부 예정이었던 국비가 불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지하도상가 내 냉난방설비의 높은 노후도를 고려할 때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경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재원 교부 방

3) 총사업비 5억 17백만원 중 국비는 공급가액(4억 70백만원)에 대한 50%인 2억 35백만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47백만원은 시에서 부담.

식에 대한 사전 확인 미흡으로 장부상 예산 불용을 초래한바,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1건에 34백만원으로,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사업에서 발생함.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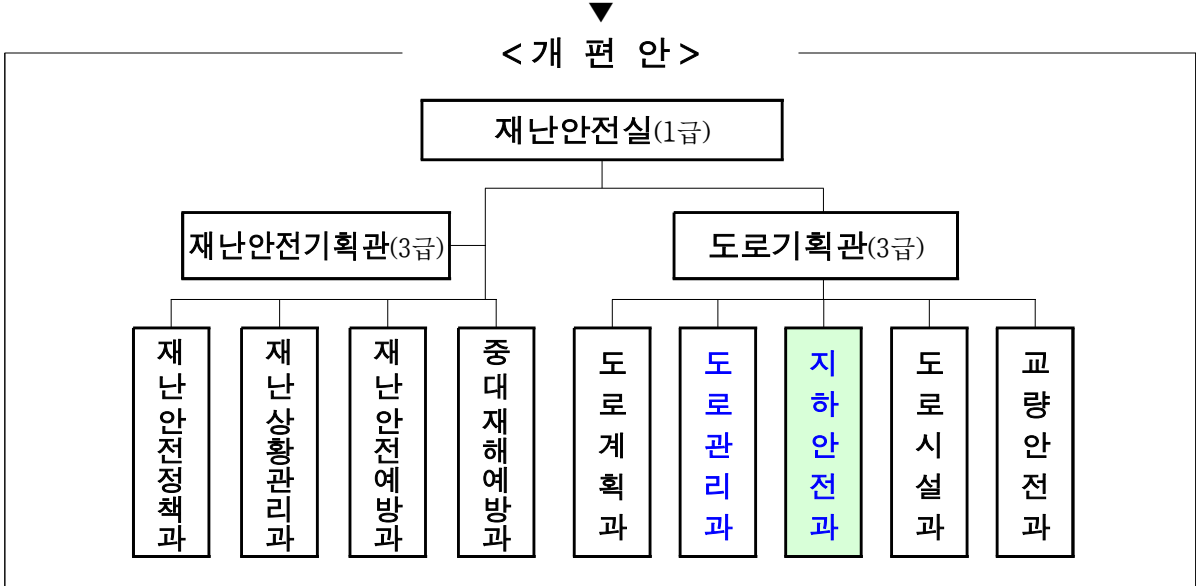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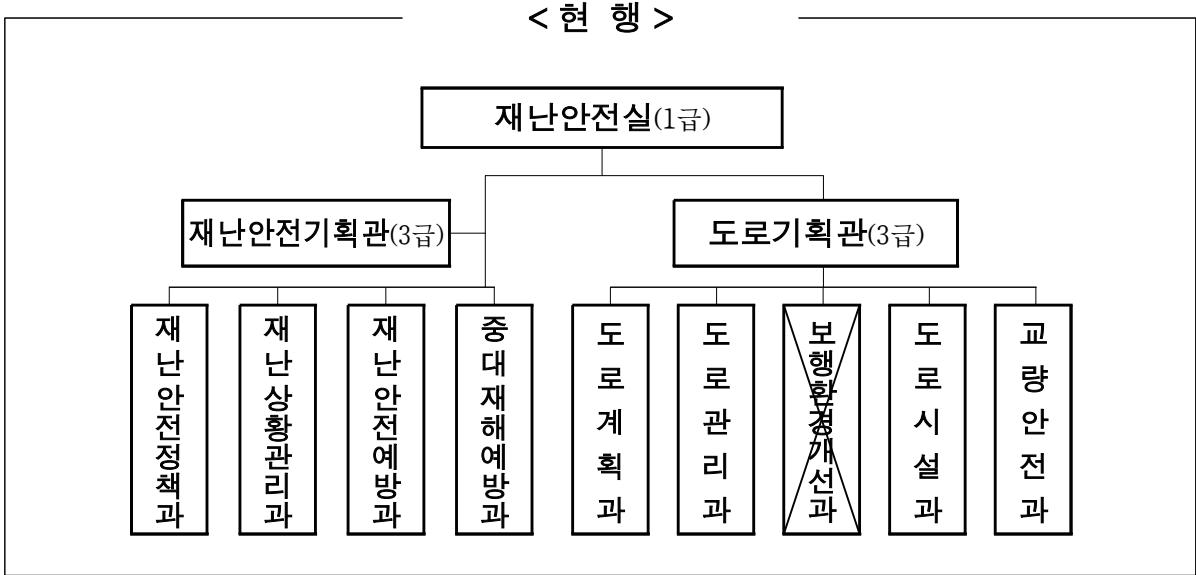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119	34	-	25-12-23	중대재해예방 정책 홍보를 위한 비용 편성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	-	34		

-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3천 4백 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는데,
 - 이는 당초 신문지면(매일경제)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포스터 광고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유튜브 광고 및 산업재해 주요 위험요인별 맞춤형 시내버스 광고 등 대상별·매체별 홍보를 추가로 추진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예산 전용은 예산 집행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항이라는 점에서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당

초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홍보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다른 통계목에서 융통하여 사용했다는 것은 홍보사업의 사업 특성상 부득이성 측면에서 타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를 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라) 이 체

-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31건에 685억 53백만원으로,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과’ 부서 폐지 및 ‘지하안전과’ 부서 신설로 도로관리과 업무 조정에 맞추어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그림] 재난안전실 개편사항

[표]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1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17	17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	-	17
2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	3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3
3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201-02	210	210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210
4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401-01 시설비	800	800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401-01 시설비	-	-	800
5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401-01 시설비	116	116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401-01 시설비	-	-	116
6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401-01 시설비	400	400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401-01 시설비	-	-	400
7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30	3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	30
8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1-14 기타보상금	2	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1-14 기타보상금	-	-	2
9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16	16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	-	16
10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2	2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22
11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860	86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	-	860
12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66	66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	-	66
13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401-01	1,701	1,701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보수·보강	시설비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1,701
14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1,466	1,466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1,466
15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	1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	12
16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301-14 기타보상금	1	1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301-14 기타보상금	-	-	1
17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4,448	4,448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4,448
18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879	879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879
19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0	10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	-	100
20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6,090	6,09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6,090
21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6	6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	6
22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3,289	3,289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	-	3,289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시설비			
23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46,451	46,451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	-	46,451
24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1	1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	-	1
25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39	139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	139
26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697	697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697
27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83	83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83
28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600	60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600
29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2	42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	-	42
30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3	3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	-	3
31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	4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4

마) 변경사용

- 일반회계 예산변경은 4건에 1억 74백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의 사업에서 발생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재난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	재난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74	17	-	25-10-28	특정업무경비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재난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 강화	204-02 특정업무경비	155	-	17		
2	재난 안전 정책과	재난관리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45	111	-	25-02-03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S/W개발 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207-02 전산개발비	-	-	111		
3	도로 시설과	지하도상가 관리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	201-01 사무관리비	17	2	-	25-05-14	지하도상가 변상금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지급에 따른 예산변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2		
4	도로 시설과	지하도상가 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59	44	-	25-08-01	지하도상가 활성화 컨설팅 시행 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	-	44		

- ‘재난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201-01)에서 1천 7백만원을 특정업무경비(204-02)로 변경사용 했는데,

- 이는 2025회계연도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당시의 현원기준 (258명) 대비 현원 증가(258명→286명)로 인해 11~12월 대민활동비 추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으로, ‘도시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1억 11백 만원을 전산개발비(207-02)로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당초 과업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 ‘촬영자료 기록관리 기능 구축’ 등 기능개선이 추가변경되어 S/W개발비에 해당하는 편성목으로 일부 변경한 것임.

○ 한편, ‘지하도상가 관리’ 단위사업 내 ‘태평로소재 지하연결통로 감정평가’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에서 2백 만원을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의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지하도상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⁴⁾를 이용하기 위한 조치임.

- 2025년 2월 말 기준 지하도상가 세외수입 체납액 5억 32백만 중 71.6%(3억 81백만원)를 변상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당 체납 규모가 큰 변상금의 세입 징수 대책이 시급한 실정⁵⁾에서 기존의 부동산 및 자동차 중심의 재산조회 방식만으로는 징

4)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신용정보 조회 및 예금 압류 추진

- 계약업체: 나이스(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개인 및 법인 대상 신용정보조회·전자예금압류서비스 국내 유일 제공)

-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연이용료 1,320천원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압류 500건 기준 선불제로 금액 차감(1건당 2,200원)되는 방식

5) 변상금 체납 시, 보증금 공제 또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하여 회수 곤란

- 대부분, 광고·부대비, 관리비 체납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민사소송으로 회수 가능

수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압류 대상을 예금 자산까지 확대하기 위해 동 서비스를 도입하였음.

- 지하도상가 변상금 체납자의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 압류 등의 적극적인 징수 조치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체납 문제가 수년간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음.
- 참고로, 동 서비스 도입으로 2025회계연도 내에 거둔 변상금 체납액 회수 실적(약 150만원⁶⁾) 자체는 다소 미미한 수준이나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효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에도 차년도(2026회계연도) 본예산에는 관련 이용료가 편성되지 않은 실정인바, 고액 체납률이 높은 변상금 징수의 실효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의 공공운영비(201-02)에서 4천 4백 만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및 시설개선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⁷⁾하기 위한 조치로,

6) 변상금 체납 10건 중 2건(1,536,400원(체납금(1,138,300원)+연체료(398,100원)) 회수

7) □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4개월)

○ 소요비용 : 22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대상 : 엠아이넥스트(주) (대표 : 김용한)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액 2천만원 이하)

○ 과업내용 : 국내 지하도상가 활성화 사례 및 관련자 인터뷰.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제 도출, 현 시대상과 변화된 지역상권 반영한 새로운 상가별 발전모델 제시

□ 지하도상가 시설개선 컨설팅 용역

- 이는 지하도상가의 매출 감소 및 상가 노후화로 인한 상권 침체 등에 대응하고자 '25. 11월 입찰공고 예정인 영등포역,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대상으로 시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변경사용한 것임.
- 지하도상가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용역 추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당초 의회가 심사하지 않은 신규 용역사업을 예산변경을 통해 시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사전 승인권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됨으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임.

바) 예비비

-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강변북로 확장 설계보상' 등 3건에 719억 31백 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강변북로 확장 설계보상	15,905	25-06-27	장기간 중단된 강변북로 확장공사 입찰최소 확정 및 적격자 및 탈락자의 설계보상 요청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
도로계획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40,490	25-02-0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15,536	25-03-31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기고지된 변상금 납부
합계	3건	71,931		

- '강변북로 확장 설계보상'건은 '10년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4개월)
- 소요비용 : 22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대상 : 주식회사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 (대표 : 강현수)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과업내용 : 지하도상점가 시설개선 및 특화 공간 모델 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제 도출, 노후 안전·방재시설 고도화 방안 모색

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었던 강변북로 확장사업(성산~반포)이 '24년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최종 제외됨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심의회가 장기간 중단된 강변북로(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의 입찰을 취소하고 설계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 2025년 5월 실시설계 적격자(1순위)의 지위인 건설사와 설계비 보상 약 109억원의 지급에 합의하였고, 나머지 낙찰탈락자들 또한 약 50억원의 설계비 보상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들과 협의회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사들로부터의 소송 제기 전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설계비 보상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임.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은 ‘09년 유통업무설비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서울시가 도로부지로 기부채납 확약 및 사용승낙을 받아 ‘13년 공사를 완료하여 ‘23년 현재 공용 중인 도로(8,675.25㎡)와 관련된 것으로

- 해당 사업은 ‘14년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었으며, 이후 해당 토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며,
- 동 소송은 2심에서 서울시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향후 판결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우선 확보한 후 2심 승소에 따라 원고로부터 반환받았던 판결금 395억 5백만

원 및 이자 9억 85백만원을 재지급한 것임.

-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건은 서울지방우정청 소관 토지(충무로1가 21-16 외 21필지)에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해 사용한 것을 이유로 서울지방우정청이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서울시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행정소송 1심 판결(원고일부 승)에 따라 미납 변상금 및 연체가산금을 가지급한 것임.

[표] 변상금 부과내역('25.3.18. 기준)

(단위: 백만원)

부과대상	점유면적	점유기간	사용료	변상금	가산금	합계
충무로1가 21-16 외 21필지	5,194.5	'17.6.23. ~'21.12.31.	12,204	12,245	3,291	15,536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도시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등 총 9건에 18억 68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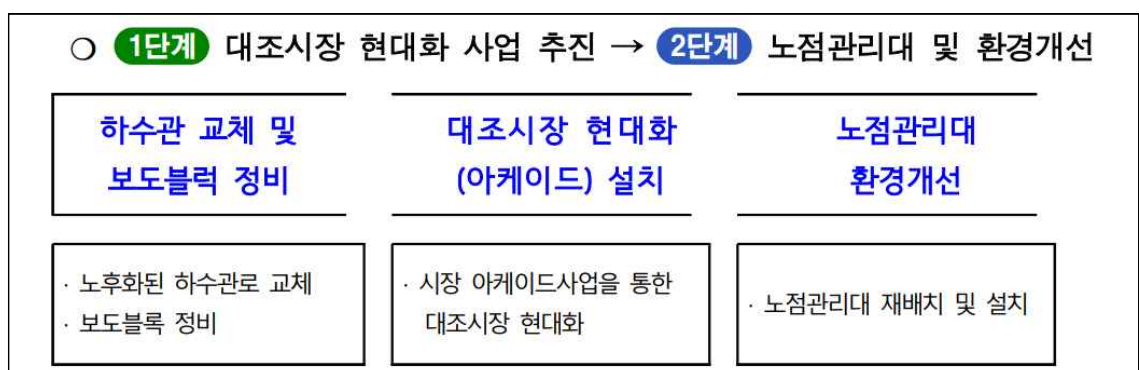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정책과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401-01 시설비	650	244	37.6%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262	11	4.3%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926	85	9.2%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2,339	1,100	47.0%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1-01 시설비	2,337	134	5.7%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97	38	19.4%
지하안전과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401-01	915	130	14.2%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시설비			
도로시설과	가로등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133	37	27.9%
도로시설과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249	89	35.6%
계			8,008	1,868	23.3%

○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는 무질서한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9억 26백만원 중 9.2%인 8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은평구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 ‘대조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사업’은 당초 2025년도 내에 대조시장 일대의 노점 53개소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가판대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 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2026년 대조시장 현대화(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공사 일정이 순연되었음.



[그림] 대조시장 현대화 및 노점관리대 개선사업 단계적 추진계획

- 이는 타 부서의 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공사 시행

으로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인근 상인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사업 연계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자치구 내부 부서 간의 연계사업에 대한 일정 조율 미흡으로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이월 처리된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자치구 재배정 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타 부서의 선행 사업 일정 및 연계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사장 및 이월 처리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

○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은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노후된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서울형 표준디자인으로 제작·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23억 39백만원 중 47%인 1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운영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78개소(가로 판매대 34개, 구두수선대 44개)를 대상으로 신규 표준디자인 시설물 제작·교체 및 이에 따른 전기공사를 당해연도 내 완료할 예정('25. 12월)이었으나,
- 시설물 운영자들의 교체의사 변동 등에 따라 시설물의 유형과 수량이 변경⁸⁾되면서 납품기한이 연장('25.12.31.→'26.1.15.)되고, 연계된 전기공사 준공기한 역시 연쇄적으로 연기('25.12.31.→'26.1.31.)됨에 따라 이월한 것임.

8)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변경: 78개 → 79개

- 동 사업은 이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도 수요조사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저조하여 9억 5천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영자들과의 사전 조율 미흡으로 예산의 상당액을 사고이월함.
 -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긴밀한 현장 조율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당부된다 하겠음.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은 도로사업소 청사관리 및 사무환경 개선으로 사무능률 및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23억 37백만원 중 5.7%인 1억 34백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7백만원 중 19.4%인 3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성동도로사업소 내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25.11월 발주 및 '26.1월 계약체결되었으나 제설대책기간('25. 11. 15.~'26. 3. 15.) 중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26.4.11.)이 미도래 함에 따른 것임.
 - 성동도로사업소는 당초 냉난방기 운영 휴지기간(3월~4월) 중 전면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⁹⁾했으나 일부만 반영

(단위 : 개)

종류		당초	변경
가로판매대	냉장고 설치형	20	21
	냉장고 미설치형	14	13
구두수선대		44	45

됨에 따라 분할 교체 공사 시 중복 발생하는 시설비(공임, 경비 등)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잔액을 확보하여 일괄 발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집행잔액 재배정 현황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B-A)	재배정	최종 예산현액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	401-01 시설비	25,000	17,820	7,180	△5,000	20,000
청사 사무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22,000	2,640	19,360	△19,000	3,000
청사 유지관리 물품 구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2,642	8,358	△4,000	7,000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401-01 시설비	110,000			24,000	134,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000	54,000

- 같은 비목 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부족한 세세부사업에 충당함으로써 적극적 예산 사용을 도모한 점은 이해가 되나 가급적 의회가 승인한 예산 내역대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같은 비목 내의 예산 변경사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9) 냉난방기 교체 관련 예산편성 현황

- 예산요청 : 시설비(1.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1억원)
- 예산편성 : 시설비(1.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0.5억원)
- 예산편성(재배정 포함) : 시설비(1.3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0.54억원)
- 추가예산 요청 내역
 - '25. 1. ~ 3. : 추가예산 요청(편성예산 계획집행 예정으로 지급 불가)
 - '25. 4. ~ 6. : 추경예산 편성 추진 (미확보)
 - '25. 7. ~ : 추가예산 요청(하반기 집행잔액 발생 시 재배정 검토)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8,645	8,645	19,405	19,405	-	-	100.0%
2024	8,000	8,000	8,000	8,000	-	-	100.0%
2023	-	-	9,220	9,220	-	-	100.0%

가) 개 요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6억 45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4억 5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이는 당초 편성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및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86억 45백만원)과 추가 납부한 ‘밤고개로 확장공사(3구간)’ 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107억 60백만원)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25,823	13,353	-	-	50 (-50)	-	39,176	30,449	8,673	-	8,673	-	54 (0.1%)
2024	20,217	5,288	-	-	-	-	25,505	12,135	13,353	-	13,353	-	17 (0.1%)
2023	7,938	19,069	-	-	-	-	27,008	16,286	5,288	-	5,288	-	5,433 (20.1%)

가) 개 요

- 예산액 258억 2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3억 5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1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77.7%인 304억 49백만원을 지출하고 22.1%인 86억 7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5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5천 4백만원으로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사업의 시설비 지출잔액(2천 5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지출잔액(9백만원)과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사업의 시설부대비 지출잔액(2천만원)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변경은 1건에 5천만원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2구간)’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당초 2구간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원과 감리비 5천만원을 편성했던 것에서 당해연도는 기본설계의 단순 보완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설계감리가 불필요해져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것임.

- 일반적으로 설계는 기본설계가 선행되고 기본설계에 기반하여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가 복잡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본설계 예산만 편성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 사업 등 8건, 86억 73백 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14,606	3,453	23.6%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1,121	216	19.3%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6,800	497	7.3%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8,953	390	4.4%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1,060	139	13.1%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4,700	3,568	75.9%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850	60	7.1%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2구간)(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350	350	100.0%
계			38,440	8,673	22.6%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사업은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구조 개선하려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47억원 중 75.9%인 35억 68백만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8억 5천만원 중 7.1%인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 협의(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지연, 하천점용허가 절차이행, 풍수해 기간(‘25.5.15.~10.15.) 중 하천 내 공사중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이 ‘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07년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에 따라 노선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된 바 있음.
- 이후 ‘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한 후, ‘17년부터 사업의 시급성, 구간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시설계(‘21.5.~‘23.9.)를 시행한 결과, 총 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대비 30% 이상 증액(370억원→695억원)되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¹⁰⁾에 따라 재

10)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2024. 3.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

투자심사를 '24.6월 통과하였고,

- '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 여건 등으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이후 약 20년간 사업중단, 노선계획 변경, 투자심사 재이행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온 만큼, 향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및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2구간)(교통관리계정)' 사업은 당초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의 송파구 광평교사거리~삼성교사거리 구간을 사업의 시급성 및 구간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분리한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3억 5천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5.4.11일 시 투자심사가 완료(조건부¹¹⁾), 총사업비 : 4,607억 15백만원)되어 추경예산을 확보('25.7월)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려 했으나 방침 수립, 용역발주, 계약 절차를 거쳐 '25.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

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11) 사업비 추가 절감 방안 마련하여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가해 이월하게 된 것임.

- 다만, 동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을 근거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전액이 사고이월된바, 예산 편성 당시 사업 추진일정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내 집행이 사실상 곤란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구간 】

- '22.05.24. :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방침(도로계획과-22628)
- '25.04.11. : 市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총사업비 : 460,715백만원)
- '25.06.19. :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일시 중지(예산 반영 시까지)
 - 당시 예산현액 : 본예산 0원, 이월예산 0원
- '25.07. :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350백만원)
- '25.09.05. : 용역(실시설계) 추진계획 방침수립(재난안전실장)
- '25.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6.05. : 실시설계 진행 중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정리보류액(C)	미수납액(A-B-C)	수납률(B/A)
2025	3,250	6,793	6,793	6,793	-	-	100.0%
2024	7,230	7,230	7,231	7,231	-	-	100.0%
2023	3,250	3,250	3,250	3,250	-	-	100.0%

가) 개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67억 93백만원으로 이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2억 50백만원)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35억원)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43백만원)이며, 67억 93백만원 전액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3,250	3,543	-	-	-	-	6,793	3,337	-	-	-	3,437	19 (0.3%)
2024	7,230	3,480	-	-	-	-	10,710	3,732	3,543	3,500	43	3,250	186 (1.7%)
2023	7,495	4,322	-	-	6 (-6)	-	11,817	733	3,480	3,480	-	3,730	3,874 (32.8%)

가) 개 요

- 예산액 32억 5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43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억 93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3억 37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9백만원이 발생함.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천 9백만원으로 ‘사가정길 ~ 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해당없음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5	149,668	149,668	147,454	147,454	-	-	100.0%
2024	84,827	84,827	84,827	84,827	-	-	100.0%
2023	14,459	14,459	37,754	37,754	-	-	100.0%

가) 개 요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96억 68백만원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등 5개 사업의 지방채 발생 1,300억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61억 65백만원 등으로 1,474억 5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474억 54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표] ‘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비고
총 계			149,668	147,454	147,454	
도로 계획과	세외수입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환수	2,214	-	-	
도로 계획과	지방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000	40,000	4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0,000	30,000	30,00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25,000	25,000	25,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25,000	25,000	25,00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0,000	10,000	10,000	
도로 관리과	보조금	가공배전선 지중화	5,582	5,582	5,582	

지하 안전과		지반침하 예방	583	583	583	
도로 시설과	지방 교부세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4,000	4,000	4,000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	800	800	800	
		정릉천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	700	700	700	
교량 안전과		서강대교 내진성능 보강	1,700	1,700	1,700	
		잠실대교 내진성능 보강	1,500	1,500	1,500	
		성수대교 내진성능 보강	1,500	1,500	1,500	
		한남대교 내진성능 보강	500	500	500	
		천호대교 내진성능 보강	500	500	500	
도로 시설과	보전수입등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89	89	89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5	714,093	80,032	703	-	4,582 (-4,582)	64,037 (-64,037)	794,828	695,463	81,390	20,524	60,866	6	17,969 (2.3%)
2024	679,740	130,406	3,593	360 (-360)	2,782 (-2,782)	-	813,738	706,821	80,032	15,420	64,612	89	26,795 (3.3%)
2023	851,313	120,886	833	800 (-800)	1,146 (-1,146)	-	973,032	801,229	130,406	26,160	104,246	398	41,000 (4.2%)

가) 개 요

- 예산액 7,140억 9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억 32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7억 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48억 28백만원으로 이 중 6,954억 63백만원을 지출하고 813억 90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179억 69백만원임.

나) 집행잔액(불용액)

- '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180억원)과 불용률(2.3%)은 전년도 대비(불용액(268억원)과 불용률(3.3%)) 다소 감소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노후 포장도로 정비' 등 14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9,060	8,093	966	10.7%
2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	915	-	915	100.0%
3	도로계획과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135	80	55	40.5%
4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99,700	95,424	2,774	2.8%
5	도로관리과	노면표시 유지관리	26,728	25,818	910	3.4%
6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30,251	28,041	429	1.4%
7	도로관리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8,400	8,052	348	4.1%
8	도로관리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1,977	805	1,172	59.3%
9	도로시설과	청계천복개(좌안) 보수	729	483	246	33.7%
10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7,382	14,565	1,587	9.1%
11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3,348	12,627	580	4.3%
12	도로시설과	육천복개2구간 보수	1,567	1,250	317	20.3%
13	교량안전과	사당고가 보수	1,400	999	401	28.6%
14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7,861	12,011	1,405	7.9%

-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은 기존 금천구 자원순환센터를 서부간선지하도로 개착구간의 지하공간으로 이전·설치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9억 15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이는 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시설 이전에 앞서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금천구의 관련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13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 수립 당시 금천구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사업 대상지 인근 재활용 처리장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 이전이 검토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 ‘20년 서울시와 금천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전체 시설 이전’이라는 당초 계획을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시설 이전’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1년 5월 사업비 분담방안(서울시 800억원, 금천구 89억원)에 합의한 후 같은 해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¹²⁾한 바 있음.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천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12) '21.08.20 : 중앙투자심사 완료(행정안전부) ☞ 조건부

- 심의조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하공간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동 시설관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총괄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되고 기편성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은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관리와 기관 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여겨짐.
-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관리 주체로서 자치구와의 협의체제 운영, 주요 행정절차 이행상황 점검 및 사업 일정관리 등을 보다 강화하여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한편, 기본설계 결과 사업대상지 특성상(도로 지하, 세장형 필지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시설 규모 및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가하였고,

[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21.8.)	변 경('25.7.)	비 고
시설물 연장/폭	274m / 18.5~25.5m	332m / 23.5~26.5m	증 58m / 1~5m
시설면적(㎡)	10,190	15,204	증 5,014㎡
총사업비(억원)	889* (시비 800, 구비 89)	1,529* (시비 1,184, 구비 345)	증 640억원
사업기간	2014~2026	2014~2030	-

- 이에 서울시와 금천구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24년 12월)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5년 4월)를 거쳐 증가사업비 640억원에 대한 재원분담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금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금천구의 분담비율을 6:4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확대된 만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효과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표] 서울시·금천구 분담 사업비

구 분	서울시	금천구	비 고
당초 사업비(889억원)	800억원(90%)	89억원(10%)	-
증가 사업비(640억원)*	384억원(60%)	256억원(40%)	-
최종사업비 분담(1,529억원)	1184억원(77%)	345억원(23%)	-

*행정1, 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금천구 재정력지수 고려하여 증가사업비 640억의 시,구 재정분담 비율(6:4) 결정

- ‘노후 포장도로 정비’는 도로포장 불량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포트홀 등 도로 파손 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997억원 중 2.8%인 27억 74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6개 도로사업소의 도로포장 불량 구간 정비 등¹³⁾에서 시설비의 2.2%인 20억 75백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송파대로 클린로드 설치 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6억 19백만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임.

13) 불량구간 정비공사, 맨홀 평탄성 공사, 긴급복구 공사, 물고임정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칼라포장, 쿨링로드 유지보수 등

- 송파대로 클린로드 설치 사업¹⁴⁾은 당초 서울시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가락동 헬리오시티 상가 지하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일 250톤)를 활용하여 송파대로(송파사거리~송파지하차도)에 클린로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었으나,



[그림]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 계획도

- '23. 5월 계획 수립 이후 상가관리단과 상가소유자 간의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지하수 활용이 무산되었으며 인근에 대한

14)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

- 사업위치: 송파구 가락동 송파대로(가락시장사거리~석촌역사거리간)
- 사업명: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구축
- 사업기간: 2023. 2. ~ 2023. 12.
- 사업내용: 클린로드시스템(L=300m), 중수도시스템, 자동살수 스마트 물순환시스템 등 구축, 저류조 설치(2개소)
- 소요예산: 1,500백만원 (시비)
 - 기본 및 실시설계: 1.5억원
 - 토목공사: 2억원 (저류조 2개소)
 - 기계설비공사: 9억원(클린로드시스템, 중수도 설비 등)
 - 전기 및 통신공사: 2.5억원(전원공급장치, 자동제어 시스템 등)
- 지하철 유출 현황
 - 위치: 가락1동 헬리오시티상가 지하(준공년도: 2018.12.)
 - 유출량: 250ton/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약 6,000만원/년 (헬리오시티 상가관리단 부담)

의 유출지하수 확보마저 실패¹⁵⁾함에 따라 결국 상수도 활용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수처리시설 및 집수정 등 구조물 설치 물량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비의 41.3%인 6억 19백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 지연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15억원 중 13억 62백만원(공사비)을 명시이월하고 6천 9백만원(설계비)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다시 사고이월(9억 62백만원)하는 등 수년간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치 못한 상황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당초의 사업취지는 의미가 크다 하겠으나, 기획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이월과 대규모 불용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낳았는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예산편성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음.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사업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도로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9억 77백만원 중 59.3%인 11억 72백만원을 불용함.

15) 송파대로 인근 유출지하수가 충분하고, 수처리시설 등 설치공간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검토(가락시장, 3호선 가락시장역사)하였으나 사업추진 부적합으로 판단됨.

- 가락시장 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유출지하수 활용은 가능하나, 수처리시설 등 설비 설치 공간 활용이 불가하여 원거리에 설치하게 되어 예산 등 사업성 부족.

- 서울교통공사(3호선 가락시장역사): 유출지하수 및 역사 지하공간 활용 가능하나, 전력부하로 변압기 증설 요구 검토 결과,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금년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 동 사업은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발생 예정인 신규 유희 공공부지(4,732㎡)에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임.



[그림] 위치도

- 그러나 선행 사업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공사 중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는 부득이 교통정체를 분산·해소하는데 기여할 인근 공사중인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28년 상반기)된 이후에야 일반도로화 및 청사이전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검토기로 함('25.9.8.)¹⁶⁾.
- 이에 진행 중이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건축·전기)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전면 중지(~'28.6.30.)하고, 공정률을 고려한 기성금액 정산 후 남은 예산 잔액 11억 72백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임.

16)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도로 용량 확대하고 기능 향상한다', 2025.9.8..

-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 활용 차로확장(4→5)·도로용량 증대...신호교차로 설치는 보류
- 안양천 접근성 개선, 지역단절 해소 위해 보행육교·덮개공원 등 새로운 연결 방안 추진
- 정부의 서울~광명 고속도로 개통 시점 이후 교통상황 분석해 평면화 추진 여부 검토
- 시, “도로이용자와 지역 주민 모두의 편익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교통영향평가 용역

- 용역기간 : '25. 2. 24. ~ '25. 10. 23.
용역중지 '25. 10. 1. ~ '28. 6. 30.
⇒ 변 경: '25. 2. 24. ~ '28. 6. 30.
- 계약금액 : 104,892천원
- 계약업체 : 건현엔지니어링
- 용역비 정산
- 기간: 착공일~'25. 9. 30. (용역중지 전일까지)

계약금액	집행금액(선금)			계약잔액
	신청금액(50%)	정산금액	선금잔액	
140,892,700원	52,446,350원	40,909,239원	11,537,111원	63,983,461원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공사 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4. 10. 7. ~ '25. 10. 6.
용역중지 '25. 11. 15. ~ '28. 6. 30.
⇒ 변 경: '24. 10. 7. ~ '28. 6. 30.
- 계약금액 : 1,935,439천원
- 계약업체 :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외 2
- 사업비 반납

구 분		재배정액(원)	집행액(원)	반납(예정)액(원)
'24	시설비 (당해예산)	282,686,250	282,686,250	-
	시설비 (당해예산)	1,200,000,000	400,102,900	799,897,100
'25	시설비 (사고이월)	282,686,250	282,686,250	-
	시설부대비 (당해예산)	4,000,000	2,200,000	1,800,000
합계		1,769,372,500	967,675,400	801,679,100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사업 전기분야 설계용역

- 용역기간 : '24. 11. 1. ~ '25. 10. 31.
용역중지 '25. 11. 1. ~ '28. 6. 30.
⇒ 변 경: '24. 11. 1. ~ '28. 6. 30.
- 계약금액 : 3,801,000천원
- 계약업체 : (주)준영이엔씨
- 사업비 반납

구분	재배정액	집행(예정)액	반납(예정)액
'25년 시설비 (사고이월)	134,626,800원	26,925,360원	107,701,400원

- 이처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동 사업의 중단으로 당시까지 집행된 총 11억 88백만원(24년도 집행액 3억 83백만원 + 25년도 집행액 8억 5백만원(24년도 이월액 4억 17백만원 포함))의 설계비 및 평가 용역비 등이 매몰될 위기에 처해있는바,
 - 이와 같은 연계사업의 경우 선행 연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은 물론 후속 연계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과거에도 막대한 예산 투입 후 이전이 무산된 이력이 있는 만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도 고려하여 제3의 대체부지 확보 방안 등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로시설과의 ‘청계천복개(좌안) 보수공사’, ‘육천복개2구간 보수’ 사업과 교량안전과의 ‘사당고가 보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적기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 당해연도 예산현액 총 36억 95백만원 중 26.1%인 9억 63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과 공사 중 시공물량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에 해당함.

[표] 보수공사 물량 감소 및 공법 변경 상세 내역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물량 및 공법변경 내역
청계천복개(좌안) 보수공사	728,592	482,960 (66.3)	245,632 (33.7)	· 미사용 식재함 철거물량 감소 (226개수 → 204개소) · 강관비계 설치·해체공사비 감소 (6,102㎡ → 3,288㎡)
육천복개2구간 보수	1,567,000	1,249,661 (79.7)	317,339 (20.3)	· 신축이음 모노셀 정비대상 50m 제외 · 포장구간(신축이음) 추가반영 14.8a(167m) · 상판보수 두께 변경 (T=50mm → 30mm) · 차선도색 6,405m 제외
사당고가 보수	1,400,000	999,192 (71.4)	400,808 (28.6)	· 상판보수 시공물량 전액 감소 (163.8㎡ → 0㎡)

- 동 사업들은 사전에 시행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수 물량과 방법을 설계하여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 후 시공 단계에서 보수 물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공법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 여건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설계 및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의 적기 보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검증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편성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 체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는 15건에 640억 37백만원으로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과’ 부서 폐지 및 ‘지하안전과’ 부서 신설로 도로관리과 업무 조정에 맞추어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음.

[표] 재난안전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1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4	4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지반침하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	-	4
2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지반침하 예방	401-01 시설비	4,845	4,845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	지반침하 예방	401-01 시설비	-	-	4,845
3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3	23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23
4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	5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	5
5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301-14 기타보상금	10	1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301-14 기타보상금	-	-	10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6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0,213	30,213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30,213
7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8,400	8,40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	-	8,400
8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7,091	7,091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	-	7,091
9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5,720	5,72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	-	5,720
10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3,083	3,083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	-	3,083
11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	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1 사무관리비	-	-	2
12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32	3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포장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	32
13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	20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	20
14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401-01 시설비	4,196	4,196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401-01 시설비	-	-	4,196
15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401-01 시설비	392	392	-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401-01 시설비	-	-	392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등 총 17건에 45억 82백만원으로,

-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공사기간 연장, 감리인 추가 배치 등의 사유로 부족한 감리비 충당을 위해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한 것임.

-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 발생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은 그 부득이함을 인정할만하다 하겠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여기서, ‘긴급 도로개선’사업의 변경사용은 신호기 신설 등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¹⁷⁾에 따라 공사

17)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

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예산에는 미편성했던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고가차도 철거’사업에서의 변경 역시 기본설계 시행 시 감리 용역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예산에는 미편성했던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은 변경사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불찰에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주의가 당부됨.

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5. 10. 1.>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19.>

⑨ 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감리원의 인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전력기술 용역업무”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로, “경력수첩”은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로 본다. <신설 2019. 12. 10.>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연결램프 신설	401-01 시설비	481	10	-	25-11-19	하천점용 협의 지연으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확보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연결램프 신설	401-02 감리비	177	-	10		
2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내부순환로(월곡 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450	145	-	25-04-29	본공사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 증가로 추가 감리비 확보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내부순환로(월곡 C)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50	-	145		
3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 부시계)	401-01 시설비	5,200	182	-	25-11-13	본공사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 증가로 추가 감리비 확보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 부시계)	401-02 감리비	681	-	182		
4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300	200	-	25-07-09	당초 풍수해기간 감리기술인 철수를 전제하였으나, 풍수해 기간 일부 공정 추진에따라 감리 기술인 추가 배치 필요하여 추가 감리비 확보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200	-	200		
5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800	100	-	25-03-17	기본설계 시행시 감리용역 시행해야 하나, 본예산 감리비 미편성하여 낙찰차액(시설비)로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	-	100		
6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1 시설비	46,398	940	-	25-11-12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술인 추가 투입 및 소방공사 감리 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감리비 증가로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2 감리비	2,911	-	940		
7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401-01 시설비	2,000	20	-	25-11-14	(명시이월예산) 전기공사 시행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용역이 필요하여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401-02 감리비	-	-	20		
8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남부순환로(개봉 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13,692	448	-	25-06-16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간 연장으로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남부순환로(개봉 사거리) 평탄화	401-02 감리비	731	-	448		
9	도로	간선도로망	남부순환로(개봉	401-01	13,244	362	-	25-12-09	공사기간 연장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획 과	확충	사거리) 평탄화	시설비					다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추가 배치가 필요하여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남부순환로(개봉 사거리) 평탄화	401-02 감리비	1,179	-	362		
10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두산 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1,050	108	-	25-03-17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기간 연장으로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두산 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50	-	108		
11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두산 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0,942	83	-	25-05-13	철도행위신고 승인 지연으로인해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배치기간 연장 필요하여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두산 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158	-	83		
12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벚꽃로 확장	401-01 시설비	1,010	15	-	25-11-12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되어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벚꽃로 확장	401-02 감리비	150	-	15		
13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4,950	742	-	25-12-05	3차 감리용역기간 증가에 따른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2 감리비	1,000	-	742		
14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성동교 확장	401-01 시설비	1,900	488	-	25-12-04	(사고이월예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되어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성동교 확장	401-02 감리비	100	-	488		
15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5,495	21	-	25-04-17	사업구간 내 건축물해체공사 시행에 따라 건축물 관리법에 의거한 감리용역을 위해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2 감리비	900	-	21		
16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7,390	248	-	25-07-09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현장검측 감독을 위한 추가 인원 필요에 의해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1,720	-	248		
17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잠수교 전면 보행화	401-01 시설비	2,571	471	-	25-11-14	'26년 감리용역 추진을 위한 본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가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잠수교 전면 보행화	401-02 감리비	400	-	471		
총 변경건수: 17건					160,280	4,582	4,582		

바) 예비비

- 예비비는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개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금호로 확장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 7억 3백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개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590	25-03-14	민사소송(공사대금)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113	25-12-19	손실보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세외수입 보전)
합계	2건	703		

- 먼저,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개선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해당 공사의 간접비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939 공사대금) 결과 간접비 감정액의 9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항소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판결금액 5억 9천만원(원금 5억 2백만원, 이자 8천 8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다음으로, ‘금호로 확장 손실보상금’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손실보상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가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들의 시 세외수입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세외수입금 중 일부(1억 13백만원)가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해당 금액을 세외수입 보전조치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의 시설비 등 총 63건에 이월금액은 예산현액(7,948억 28백만원) 대비 7.6%인 608억 66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연결램프 신설	401-01 시설비	471	180	38.1%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연결램프 신설	401-02 감리비	187	83	44.3%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9,430	1,253	13.3%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2 감리비	1,220	321	26.3%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401-01 시설비	36,097	12,085	33.5%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401-02 감리비	2,646	459	17.3%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3,100	959	30.9%
도로계획과	민자도로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 연구	207-01 연구용역비	400	119	29.7%
도로계획과	올림픽대로 연결로(노량진로23길~노량대교) 설치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100	38	38.4%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700	217	31.0%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100	35	35.0%
도로계획과	긴급 도로개선	401-01 시설비	4,949	1,478	29.9%
도로계획과	광운대역~월계로간 도로개설	401-01 시설비	3,355	414	12.3%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19,884	10,491	52.8%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2 감리비	1,541	515	33.5%
도로계획과	내곡IC 연결로 신설	401-01 시설비	268	93	34.8%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모니터링	401-01 시설비	162	57	35.4%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1,248	528	4.7%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362	82	22.6%
도로계획과	벚꽃로 확장	401-01 시설비	3,595	674	18.8%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0,142	2,415	23.8%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2 감리비	2,201	799	36.3%
도로계획과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 검토	401-01 시설비	493	164	33.2%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11,224	1,529	13.6%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2 감리비	1,578	115	7.3%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7,142	90	0.3%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1,968	143	7.3%
도로계획과	월계로(창문여고~북서울꿈의숲) 지하도로 건설	401-01 시설비	150	150	100.0%
도로계획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401-01 시설비	2,100	1,769	84.2%
도로계획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401-02 감리비	871	871	100.0%
도로계획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401-01 시설비	1,186	850	71.7%
도로계획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401-02 감리비	235	134	56.9%
도로계획과	계획홍수위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등 대응방안 마련	401-01 시설비	250	125	50.0%
도로계획과	안양천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300	79	26.4%
도로계획과	원효대교 복단 및 국제업무지구 서측 연결 교차로 개선	401-01 시설비	300	80	26.7%
도로계획과	도봉역사거리~노원교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250	65	26.1%
도로계획과	상도로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500	304	60.8%
도로계획과	마장~신답간 보행교량 신설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100	44	44.2%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7-02 전산개발비	457	178	39.0%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93,983	841	0.9%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2 감리비	4,100	482	11.8%
도로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20,054	2,521	12.6%
도로관리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401-01 시설비	4,588	1,271	27.7%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0,752	1,230	11.4%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1,127	312	27.7%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3,348	141	1.1%
도로시설과	정릉천2복개 구조물 내진성능 보강	401-01 시설비	700	700	100.0%
도로시설과	사당천복개 보수	401-01 시설비	406	123	30.3%
도로시설과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	401-01 시설비	800	800	100.0%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5,898	642	10.9%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2 감리비	128	53	41.0%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780	184	23.6%
도로시설과	2040 도로조명시설 관리 기본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190	122	64.0%
교량안전과	양화대교 보수	401-01 시설비	480	22	4.5%
교량안전과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600	294	49.0%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개봉교)	401-01 시설비	250	38	15.3%
교량안전과	신정교 보수	401-01 시설비	1,000	145	14.5%
교량안전과	중차량운행노선 보완구축 및 개선	401-01 시설비	300	118	39.5%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401-01 시설비	6,586	4,125	62.6%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401-02 감리비	400	1	0.3%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량안전과	삼각지고가 보수	401-01 시설비	3,399	2,231	65.7%
교량안전과	모래내고가 성능개선 교통영향평가	401-01 시설비	98	41	42.0%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7,861	4,446	24.9%
계			349,087	60,86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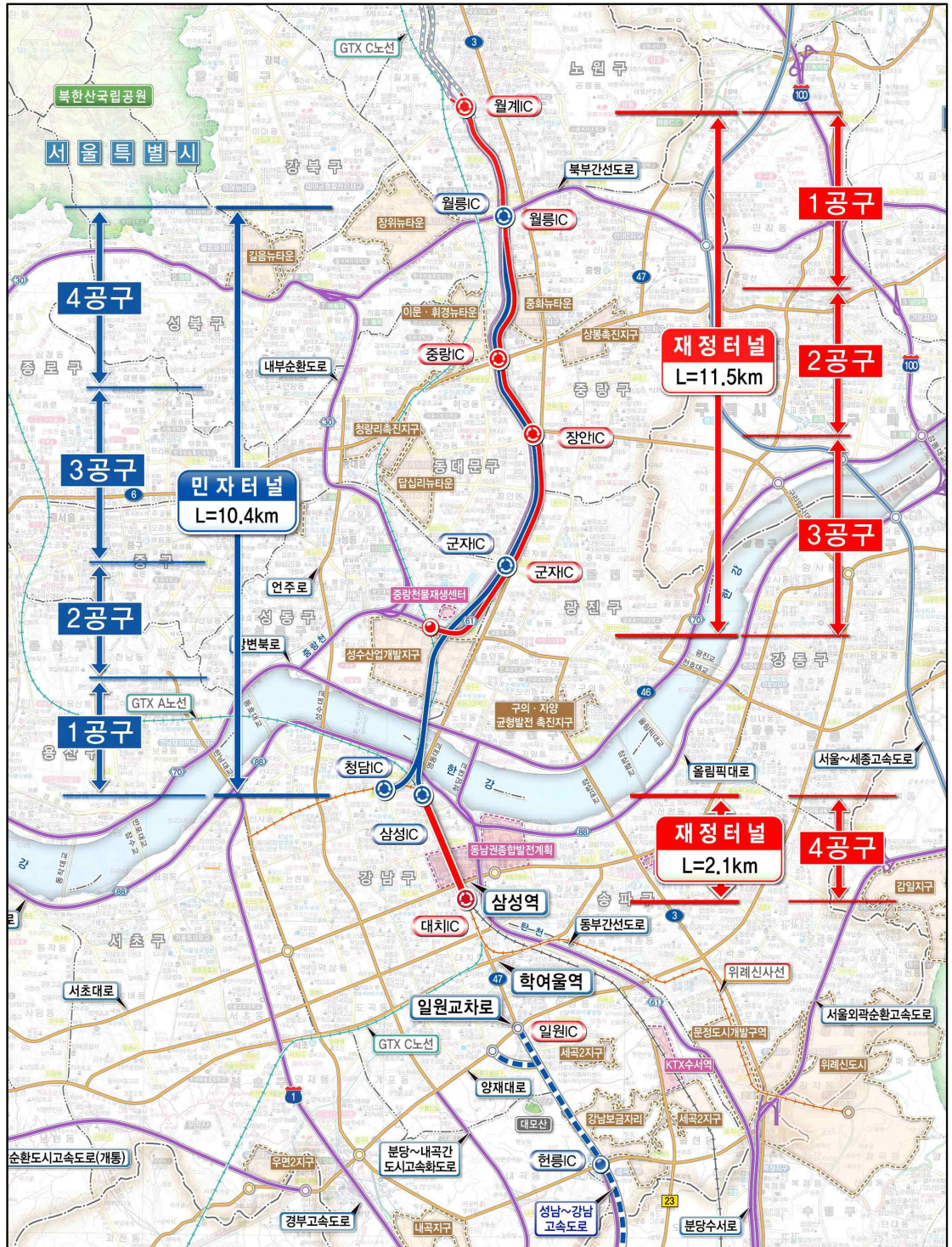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사업은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던 기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도로시설을 적법화하고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랑천의 하천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 당해연도 시설비 360억 97백만원 중 33.5%인 120억 85백만원 과 감리비 26억 46백만원 중 17.3%인 4억 59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사업개요 〉

- 위 치 : (1~3공구, 중랑천구간) 성동구 송정동 ~ 노원구 하계동,
(4공구, 영동대로구간) 강남구 청담동 ~ 대치동
- 규 모 : (중랑천구간) 지하도로 4~6차로 11.5km,
(영동대로구간) 4차로 2.1km
- 사업기간 : 2018. ~ 2034.
- 총사업비 : 19,839억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사업개요 〉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남단) ~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
- 규 모 : 왕복 4차로 병렬터널, 연장 10.4km (소형차전용도로)
- 사업기간 : 2019. ~ 2029.
- 총투자비 : 12,847억원 (시비 4,279억원, 민자 8,568억원)



[위치도]

- 이는 제4공구 남단 수직구 조성을 위한 강남구 녹지점용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2개월)와 사업구간 내 매장문화재 (토기, 기와편, 자기 등) 출토에 따른 정밀 발굴조사 실시(5개월)로 공정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 동 사업은 영동대로 일대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제4공구)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23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3년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175억 81백만원 중 61억 86백만원이 이월되었고, '2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착공 일정이 당초 상반기에서 9월로 연기되면서 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가 사고이월된 바 있으며,
- 2025회계연도에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연례적인 이월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즉, 그 동안의 연례적인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한 2029년 9월 제4공구 우선 준공 일정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표] 재정구간 추진현황

중랑천 구간(1~3공구)	영동대로 구간(4공구)
○ 동부간선 지하도로 IC 연결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 - 용역기간 : '24.10. ~ '26.09. - 추진내용 : 대안별 노선 및 교통, 구조물 검토	○ 동부간선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 추진 중 - 공사기간 : '23.02. ~ '29.09. - 추진내용 : 본공사(굴착) 진행 중

-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점용허가 등 주요 선행절차에 소요

되는 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공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 및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겠음.

-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도시고속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남대교 남단 연결로를 개선하고 양화대교 북단 진출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31억원 중 30.9%인 9억 5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5.3월 실착공 이후 우기철 수방기간(‘25.5.15.~10.15.) 중 공사가 중지되었고 양화대교 북단 지장물(가스관, 상수관) 이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후속 공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임.
 - 수방기간에 따른 공사 중지와 지장물 이설 협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요인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일정과 예산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사업은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일대의 도로 평탄화를 통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오류IC교 병목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198억 84백만원 중 52.8%인 104억 91백만원과 감리비 15억 41백만원 중 33.5%인 5억 1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푸르지오아파트 방음벽(L=100m) 구간의 흠막이 가시설 설치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됨에 따라 골재치환 공종이 추가되었고,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차로 폭 조정 및 옹벽 이설공종 등이 추가되면서 당초 계획된 공정이 순연된데 따른 것임.
- 또한, 당초에는 남부순환로 본선 차로를 점용하여 흠막이 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교통혼잡 우려로 관할 경찰서가 도로점용을 불허함에 따라 공사방식이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 공종이 발생함.



[그림] 가성토 공종 추가

- 이에 따라 연약지반 안정화, 지장물 이설 등 후속 공정이 추가되면서 '23회계연도 이후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준공시기 또한 당초 '23년 12월에서 '25년 12월로 연기된 상태임.

[표] '23회계연도, '24회계연도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사고이월		예산 현액	사고이월	
			사유			사유
시설비	14,587	6,815	개봉푸르지오아파트 방음벽 기초공사 시공 중 지장물 저촉, 본선 구간 평탄화 작업 중 구간 연약지반 발생에 따른 안정화 작업 등으로 9차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16,700	7,001	남부순환로 본선구간 평탄화 작업중 연약지반 발생에 따른 안정화 작업, 지장물(상수도) 저촉으로 인한 공정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감리비	822	100	시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기간 연장 필요하여 예산 사고이월	940	-	
계	15,409	6,915		17,640	7,001	

-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종 추가의 불가피성은 일부 인정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도로 점용 협의 등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여겨짐.
- 따라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주요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연례적인 사업지연과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기존 상부의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차로수 및 차로폭 조정을 통해 자전거도로, 보도 및 녹지 등 친환경 가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

로, 당해연도 시설비 101억 42백만원 중 23.8%인 24억 15백만원과 감리비 22억 1백만원 중 36.3%인 7억 9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입체교차로 평면화(4개소) 공사가 교통혼잡 심화와 이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로 보류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부터 금천구 가산동 555-1까지 연장 8.1km 구간(폭 15m)을 대상으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3년 7월 착공하여 '26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음.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금천구 가산동 555-1
- 사업규모 : 폭 15m, 연장 8.1km, 친환경공간 조성 107,000㎡
- 사업기간 : 2013.09. ~ 2026.07.
 - 기본설계 : '16.05.19 ~ '19.03.31
 - 실시설계 : '19.07 ~ '22.08.31
 - 공 사 : '23.07.10~ '26.07.08
- 총사업비 : 125,691백만원(기투자 19,879, '25년 5,950, 향후 99,862)
- 시공사(건영 외4), 감리사(경원엔지니어링 외3), 설계사(유신 외4)

- 그러나 '25년 6월 오목교 지하차도 일직 방향 차로 폐쇄 이후 예상과 다른 큰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시는 같은 해 9월 동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대체 교통축 역할을 수행할 '광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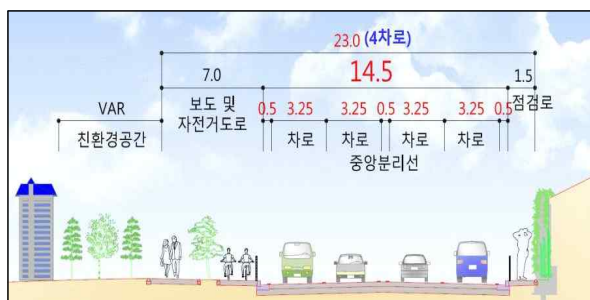
을 고속도로'의 개통('28.1월 예정) 이후 사업 추진여부를 재검토기로 결정함.

- 이에 동 사업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전·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1단계는 지상부 도로의 교통용량 확대(4차로→5차로) 및 안양천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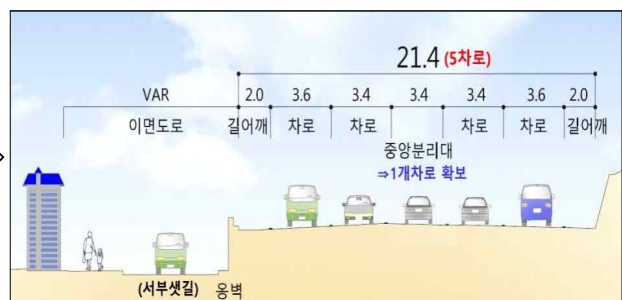
□ (1단계) 개선방안별 실행계획

① 지상 서부간선도로 용량 증대 (4차로→5차로)

- (개선방안)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3.2m 내외)을 활용하여 4차로를 5차로로 도로용량 증대
 - 도로용량 : (당초) 6,800대/시 → (변경) 8,500대/시(△1,700대/시, △25%)
- (실행계획) 기존 일반도로화 설계안을 변경, 5차로 운영계획 수립
 -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 활용으로 매몰비용 최소화
 - 3+2차로 또는 출퇴근 시간대 가변차로 운영방안 검토(경찰청 협의 필요)



<당초계획(4차로)>



<개선방안(5차로)>

② 안양천 접근성 개선 및 시민 편의제고 방안 추진

- (개선방안) 기존 보행육교 리모델링(E/V, E/C 등 설치) 및 추가 설치, 도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방안 검토
 -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동서 생활권을 연결 및 안양천 접근성 개선
 - 덮개공원 조성시 공원내 주민의견을 반영한 편의시설 및 공간 적극 수용
- (실행계획) 기존 용역*을 통해 설치 위치 및 규모 검토하고(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별도 발주

- 당초 보행육교(6개소) 및 입체교차(횡단보도 등)(8개소) 위치 및 보행수요를 고려한 최적 위치·규모 검토

※ 기존 용역 :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검토 용역(도로계획과)

※ 기본 및 실시설계 : 별도 방침 수립(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25년 본예산 활용



< 도로 옆 옹벽(단차)으로 안양천 접근성 열악 >

<현황>



<개선방안(보행육교+뒷개공원)>

- 2단계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상황을 재분석하여 일반도로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됨.

<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개요 >

- ▶ 위치: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 강서구 방화동(방화터널)
- ▶ 규모: 왕복 4~6차로, 연장 20.2km, 전차종
- ▶ 공사기간: (당초) 2019. 3. ~ **2024. 5** → (변경) 2019. 3. ~ **2027. 12.**
- ▶ 사업시행자: 서서울고속도로(주) *국토교통부 추진 민간투자사업

- 이처럼, 연계 교통망 구축 일정과 사업 추진 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과 예산 이월이 초래되었는바,
-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연계사업의 진행상황과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동 사업의 경우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기점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본 공사가 중단되고 부득이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키로 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을 차제하더라도,
 - 현재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설계와 전혀 다른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된 1단계 공사의 경우 본 예산에 대한 의회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 내용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때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 중단 시기를 기점으로 집행잔액을 모두 불용처리하고, 설계변경된 제1단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등에서 새로이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바,
 -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월계로(창문여고~북서울꿈의숲)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RC박스(L=50m)를 설치하고 녹지(940㎡)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시설비 1억 5천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해당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것으로, ‘25년 10월 투자심사 통과 이후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2월 계약

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26.12월)이 미도래하여 전액 이월하게 된 것임.

- 한편, 금회 사고이월한 예산은 전액 '24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3.12월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된 이후 투자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확보되지 않아 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됨.

■ 추진경과

- '23.02.07.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수립
- '23. 5~12.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 '25.03.04. : 제1차 市투자심사(재검토)
 - RC BOX(131m)+녹지조성(4,680㎡), 사업비(290.7억원, B/C 0.88)
- '25.07.09. : 제4차 市투자심사(재검토)
 - RC BOX(100m)+녹지조성(2,880㎡), 사업비(256억원, B/C 1.0)
- '25.10.16. : 제6차 市투자심사
 - RC BOX(50m)+녹지조성(940㎡), 사업비(176억원, B/C 1.95)

[표] 주요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명	월계로(북서울꿈의숲) 구조개선		
사업기간	'23.5. ~ '28.12.		
규모	- RC BOX설치 L=136m, - 녹지조성 4,680㎡	- RC BOX설치 L=50m, - 녹지조성 940㎡ - 종단경사 완화(6.5%→5.6%)	
사업비	291억원	176억원	
경제적 타당성(B/C)	0.88	1.95	

-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토와 조정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점은 이해되나,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다시 사고이월되는 예산사용의 전형적인 비효율성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일정과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잠수교 전면 보행화’사업은 현재 왕복 2차로와 보행로(자전거도로)로 이용 중인 잠수교를 전면 보행로로 전환하고 시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21억원 중 84.2%인 17억 69백만원과 감리비 8억 71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이 ‘26년 1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잔금 2억 33백만원과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한 비용 15억 36백만원, 감리비 8억 71백만원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25.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시설비 75억 71백만원과 감리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설계자문 과정에서 보행데크 확장부와 기존 교량 연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접합부 상세설계 보완 등이 요구되었고, 설계경제성(VE) 검토 결과 배수체계 개선, 난간 교체 범위 조

정, 교량 신축이음 개선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설계기간이 연장됨.

- 이에 서울시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사 추진 일정 지연을 반영하여 일부 공사비를 감액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역시 상당 규모의 예산이 사고이월됨.
-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욕만 앞세우기 보다는 발생 가능한 설계 보완 및 기술검토 사항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일정과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연례적인 예산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2차로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로 이용 중인 잠수교를 보행공간을 포함한 문화공간과 자전거도로로 조성함으로써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문화예술다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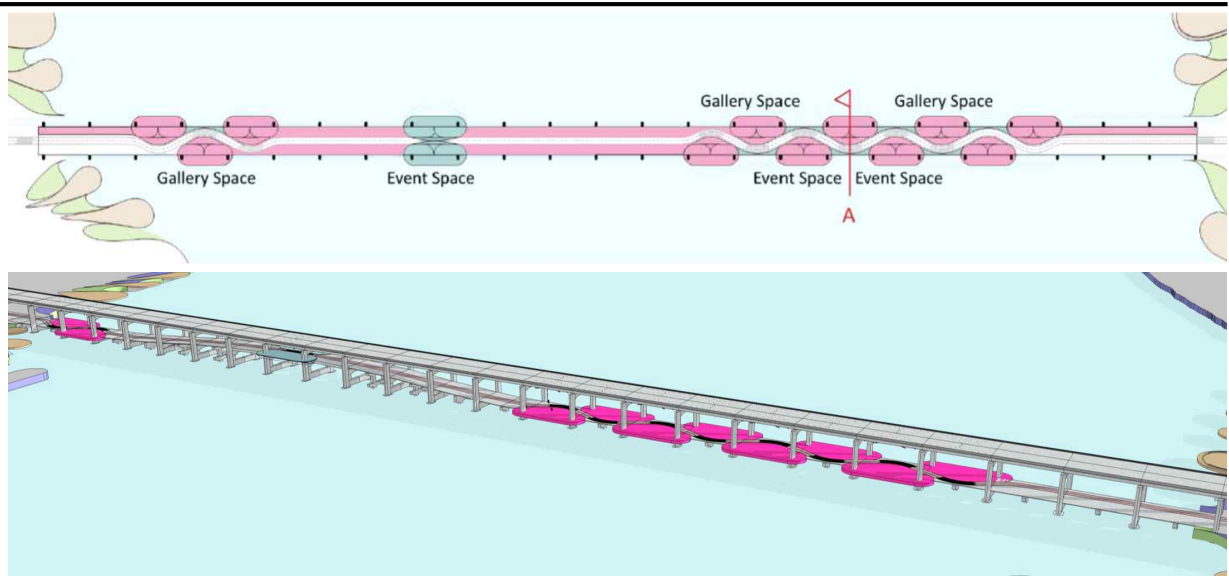
(현 황) 차도(2차로) + 자전거도로 + 보행자도로

⇒ (문제점) 잠수교를 단순 이동공간으로 이용, 행사축제기간 외 활동공간 부재

(조성방향) 문화공간(보행공간 포함) + 자전거도로

(컨셉)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문화예술다리로 조성(핑크색 컨셉 유지)

(공간계획) 데크 확장을 통해 이벤트 및 휴식·전망·여가공간 확보



< 평면도 및 조감도(안) >

- ‘접근성 개선’은 잠수교 남단(고속터미널역(고투몰)→잠수교)과 북단(용산공원(한강중학교, 녹사평대로)→잠수교)에 보행통로 신설, 보도 개선 및 확장,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잠수교 보행 접근성 개선방안

[1] 잠수교 남단 : 고속터미널역(고투몰) → 잠수교

(현 황) (지하) 공공보행로(6.0m) → 한강공원 진출입로(1.2m, 계단)

(지상) 보도(1.3m~3.5m) → 지하 보행통로(6.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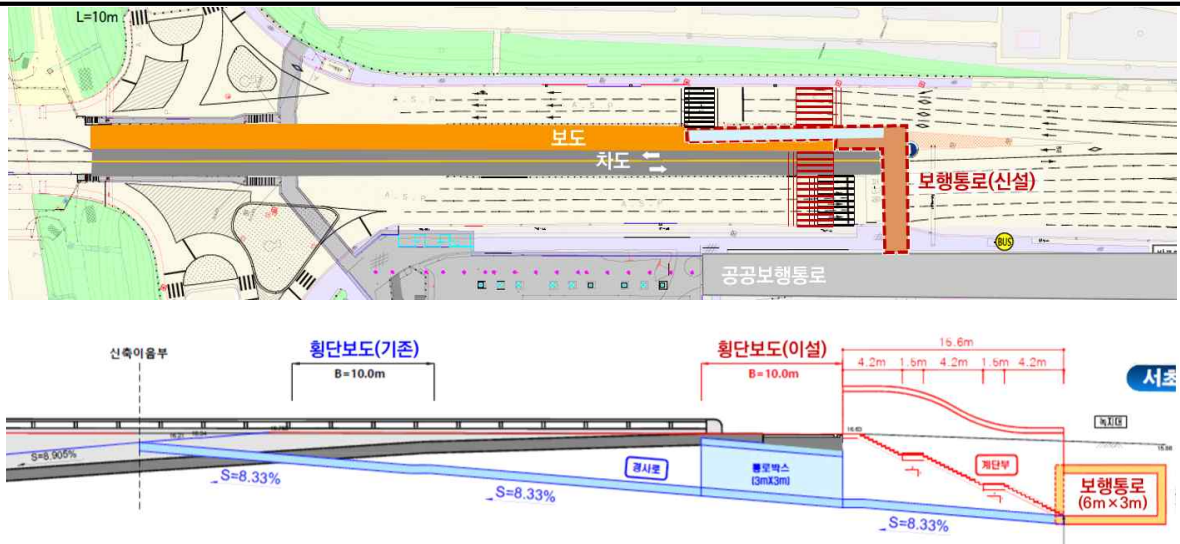
⇒ (문제점) 잠수교를 가기 위해서는 ①지상부 좁은 보도(폭 1.3m)를 이용하거나, 반포대로상 ②횡단보도 이용 또는 ③한강공원 진출입로(1.2m)를 이용해야 함.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등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경우 안전사고 우려

(개선방안) 고속터미널에서 잠수교까지 끊김 없이 넓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

(단기) 공공보행로(6.0m) → 지하 보행통로(6.0m)^{신설} → 지하 보행통로(6.5m)

(장기) 동측 지상부 보도 확장(3.0m이상) → 횡단보도 → 지하 보행통로(6.5m)



< 지하 보행통로 신설 방안 >

[2] 잠수교 복단 : 용산공원(한강중학교, 녹사평대로) → 잠수교

(현 황) (동측) 녹사평대로 보도(B=2.0m) → 횡단보도 → 지하 보행통로(B=6.0m)

(서측) 녹사평대로 보도(B=3.2m) → 한강공원 진출입로(1.2m)

⇒ (문제점) 서측 보도에서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 보행통로 접근 불가

(개선방안) 지하 보행통로 확장 : 2차로 + 보도(6.0m) → 보도(12.0m)

녹사평대로 보도 개선(동측), 횡단보도 신설



< 잠수교 복단 개선방안 >

○ ‘정릉천2복개 내진성능 보강’ 및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사업은 지진 발생 시 대형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25.8월)¹⁸⁾받아 추진 중이나,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100%를 전액 사고이월하였음.

- 세부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정릉천2복개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45억 62백만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19억원) 중 행정안전부 특교세 7억원을 재배정(’25.10월)받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편성(’25.11월)하여 12월에서야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공사분 준공기한(’26.7.16.) 미도래로 전액 사고이월 한 것임.

-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역시 ’25. 10월 특별교부세 8억원이 재배정되어 11월 공사 발주 후 12월 5일에야 착공함에 따라 1차 공사분 준공기한(’26.5.31.) 미도래로 특교세 8억원을 전액 사고이월함.

- 동 사업들은 교부세 교부 및 기금 배정 일정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회계 원칙상 사고이월 처리가 불가피했던 측면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교량 및 지하차도 내진보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

18)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3032호(2025.8.14.)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알림, 재난안전정책과-12723호(2025.8.14.)

- 2025.10.14. 특별교부세 예산 재배정

결되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교부세가 지원된 만큼 향후에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후속 공정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공정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음.

- 아울러, 동 사업들은 총사업비 규모가 커 재난관리기금까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공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은 마포대교의 노후화된 쉼터 및 생태체험관 등 전망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6억원 중 49%인 2억 94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2025년도 5월 착수한 ‘마포대교 보수 및 전망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예정일(’26.3.20.)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2025년도 본예산에 22억원의 공사비 및 설계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나, 용역 착수보고회(’25. 7월)¹⁹⁾에서 생태체험관의 리모델링 여부 및 쉼터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이 불투명해져 20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 16억

19) ‘마포대교 보수 및 전망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 개최일시: 2025.7.1.(화) 10시

- 장소: 본관 10층 청문회의실

- 참석자: [내부]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교량안전과장, 교량기획팀장, 미래한강본부 운영부장, 담당자 등
[외부] 사업책임기술자 및 용역 수행자 등

원 전액을 감액한 바 있음.

- 제2회 추경안 심사 당시 주요 사업내용의 추진 방향이 착수보고회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은채 이에 일정 차질을 빚고 있음에 따라 면밀한 사전검토를 당부²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체험관 개축 계획을 기존 2층에서 단층 구조로 또다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계획²¹⁾되어 있는바,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계획성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보여짐.



[그림]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계획

20) 2025년도 제2회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p. 16

- 동 사업은 기존 마포대교의 노후화된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행환경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사업내용의 추진방향이 착수보고회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아 설계 및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당초 사업 추진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21) '마포대교 보수 및 전망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현안사항 보고' 中, 교량안전과-21991호, 2025.12.8..

□ 조치계획

- 본 용역의 중간보고회(자문) 결과 생태체험관 단층규모(개축) 방안 검토 요구에 따른 실시설계 소요 예산(99백만원)을 예산범위에서 활용 및 설계변경 추진
- 향후 생태체험관의 확정 개선안(리모델링, 개축)에 따라 정산처리코자 함.
※ 설계변경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증 감	비 고
	당 초	변 경		
도 급 액	388,380,000	488,140,000	증) 99,760,000	
공급가액	353,421,761	444,150,157	증) 90,728,396	
부가가치세	34,958,239	43,989,843	증) 9,031,605	

- 향후 남은 용역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계획 변경이나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사업은 1966년 준공된 서소문고가를 개축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65억 86백만원 중 62.5% 인 41억 25백만원과 감리비 4억원 중 0.3%인 1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025년 4월 착공하였으나, 중구 및 서대문구 주민설명회 개최(3회) 등 사전 홍보 활동²²⁾과 교통 통행량이 최소화되는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철거기간(2025. 9. 21. ~ 2026. 6. 30.)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은 최근 교량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²³⁾하여 추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가 일부 중지된 상황²⁴⁾으로 해체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기존의 안전관리

22) ○ 주민설명회 추진 내역

- 중구, 서대문구 주민설명회 개최(2025년 7월 중 3회)
- 기타 홍보 내역
 - 보도자료(지상파 등 2회) 배포, 네비게이션 및 전광판, 버스단말기 등
 - 거리 홍보 캠페인(2025년 8월 중 2회), 아파트 등 50개 건물 전단지 배포

23) 2026. 5. 26. 14시 31분경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 중 공중비계와 거더가 일부 붕괴되어 부상자(3명)와 사망자(3명)가 발생함.

24) 서울시는 잔여 교각(2개소)에 대한 철거 재개 여부를 2026. 6. 15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계획임.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바, 현재 진행중인 타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은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 이후 서소문고가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위치상 철도 작업구간과 지하철 근접 시공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장 및 주변, 그리고 통행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임.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 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 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본 경비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5	1425,536	41,414	380,424	-	339,500	23,745	631,601	8,852	1,425,536	294,901	583,544	15	339,500	150,000	-	57,576
2024	1076,717	72,609	228,373	-	-	31,713	716,092	27,930	1,076,717	374,744	631,601	11	-	-	28,947	41,414
2023	1031,653	29,872	221,659	-	-	32,645	686,071	61,406	1,031,653	221,626	716,092	11	-	11,503	9,812	72,609

♣관련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차입금	기금 목적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 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본경비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등

※ **법정적립액**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도록 된 금액

가) 개 요

- 재난안전실(재난안전정책과) 및 복지실(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재난계정, 재해계정, 구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재난계정²⁵⁾이 재난안전실 소관임.

나) 기금 총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당해연도말 조성액²⁶⁾은 전년도말 조성액 6,730억 1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²⁷⁾ 7,525억 21백만원과 사용액²⁸⁾ 4,449억 16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9,806억 20백만원임. ([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73,015	307,605	752,521	444,916	980,620

2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원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

※ 구호계정의 경우 1천분의 5

26) 당해연도말 조성액 =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조성액 - 사용액)

27) 당해연도 조성액 = 전입금 + 차입금 + 이자수입 + 기타수입

28)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다) 기금 수입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 계획액은 예치금회수(5,594억 91백만원), 전입금(3,804억 24백만원)²⁹⁾, 이자수입(300억원), 그외수입(3억원)을 합한 9,702억 15백만원이었으나,
- 의사집단행동 대응 및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19차례³⁰⁾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치금회수(증721억 10백만원), 모집공채(증3,500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입계획액을 1조 3,923억 25백만원으로 수정하였음. ([표] 참조)

[표] 수입계획액 수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당초	수정	증감	
합계	970,215	1,392,325	422,110	1,425,536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0	30,000	0	23,529
기타이자수입	0	0	0	216
보조금반환수입	0	0	0	1,005
그외수입	300	300	0	7,847
모집공채	0	350,000	350,000	339,500
전년도이월사업비	0	0	0	41,414

29)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0) 주요 변경사유

- 제1차 변경 : 한파 대피 공간 확대 운영지원 등 7건
 - ▶ 재난예방 : 증4,324백만원
 - ▶ 예치금회수 : 감4,324백만원
- 제6차 변경 : 의사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비상진료 지원
 - ▶ 재난예방 : 증1,879백만원
 - ▶ 예치금회수 : 감1,879백만원
- 제12차 변경 : 집중호우 호안 및 하천시설 응급복구 등 36건
 - ▶ 재난예방 : 증11,268백만원
 - ▶ 예치금회수 : 감11,268백만원

예치금회수	559,491	631,601	72,110	631,601
기타회계전입금	380,424	380,424	0	380,424

- 이에 따라 전년도이월액 414억 14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1조 3,923억 25백만원이었으나, 보조금반환수입 및 전년도이월사업비 증가 등으로 1조 4,255억 3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가)	(나)	(다)=(가)+(나)	(라)	(마)
970,215	1,392,325	41,414	1,433,739	1,425,536	1,425,536

라) 기금 지출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당초 지출계획액 9,702억 15백만원을 1조 3,923억 25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 전년도이월액 414억 14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조 4,337억 39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1조 3,679억 59백만원을 지출하고 575억 77백만원을 이월하였음. ([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당초	수정(가)	(나)	(다)=(가)+(나)	(라)	(마)
970,215	1,392,325	41,414	1,433,739	1,367,959	57,577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등을 위해 1조 1,103억 8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재난예방사업 1,684억 67백만원, 응급복구 158억 64백만원, 연구용역 1억 87백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500억원 등을 지출하였음([표]참조).

[표] 2025년도 지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재난예방	의사집단행동	110,382	◦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등 ◦ 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응 지원인력 등
	재난예방 및 대응	168,467	◦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노후 방재시설 보수보강, 폭염·한파대책 및 제설대책 등
	소계	278,849	-
응급복구		15,864	◦ 한강공원 침수복구, 하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등
연구용역		187	◦ 재난예방·대응·원인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행정운영경비		15	◦ 기금운용 심의자료 제작 및 수당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		150,000	◦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탁금		339,500	◦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예치금		583,544	-
총계		1,367,959	-

- 한편, '20년 4월 2일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³¹⁾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20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했던 누계 법정 의무예치금을 모두 소진³²⁾하였으며 '21년부터 의무예치금을 재적립하기 시작하여 '25.12.31일 기준 법정 의무예치금 잔액은 1,462억 84백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5년 총심의액 3,223억 305백만원 중 17.8%인 575억 77백만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의 경우 수요발생의 불특정성 및 긴급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일정치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25년 풍수해대책기간 전 사업완료를 위하여 '25년 4분기 발주 재난예방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서 상세 이월사업현황은 다음[표]와 같음.

[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31)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32) 의무예치금액 사용 특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2020년까지의 누적 의무예치금액(306,183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예치금을 재적립 중임. (2025년도말 기준 146,284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92건			77,724	57,577	'25전체심의액(322,305백만원) 대비17.8%	
1	재난예방 (11-2. 가양대교 방호벽 교체 및 바닥판 보수)	교량안전과	500	435	87.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	재난예방 (4-1. 교량 콘크리트 박락 위험구간 긴급 정비)	교량안전과	663	78	11.8%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	재난예방 (15-13. 퇴계로399일대 외 3개소 사각형 거보수)	중구 치수과	2,836	1,316	46.4%	-준공기한 미도래(2026.5.)
4	재난예방 (15-14. 자동차시장1길 주변 사각형거보수공사)	성동구 치수과	2,351	1,727	73.5%	-준공기한 미도래(2026.2.)
5	재난예방 (15-15. 한천로235~한천로133간 사각형 거보수)	동대문구 치수과	1,300	1,090	83.8%	-준공기한 미도래(2026.7.)
6	재난예방 (5-38. 전농로94~전농로38간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	동대문구 치수과	900	445	49.4%	-준공기한 미도래(2026.7.)
7	재난예방 (15-16. 무학로201~안암로2길15간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	동대문구 치수과	1,100	935	85.0%	-준공기한 미도래(2026.7.)
8	재난예방 (15-17. 전동중학교~한천로46길120간 외 1개소 사각형거보수)	동대문구 치수과	1,100	1,060	96.4%	-준공기한 미도래(2026.7.)
9	재난예방 (15-18. 태릉시장 주변 사각형거보수)	종랑구 치수과	1,105	1,104	9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0	재난예방 (15-22. 노원로14길 일대 등 8개소 원형 관로보강)	노원구 치수과	1,597	1,596	9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1	재난예방 (15-23. 마들로1길45일대 외 7개소 원형 관로보강)	노원구 치수과	1,482	1,481	9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2	재난예방 (15-21.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일대 등 2개소 사각형거보수)	노원구 치수과	307	306	99.6%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3	재난예방 (15-24. 불광로6길25-1일대 노후사각형 거보강)	은평구 치수과	870	87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4	재난예방 (15-25. 연서로290일대 노후사각형거보수)	은평구 치수과	1,602	1,602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5	재난예방 (15-28. 거북골로14길32~224외2개소 사각형거보수)	서대문구 치수과	2,770	1,867	67.4%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6	재난예방 (15-32. 한마을아파트~서울매봉초등학교 외 3개소 사각형거보수)	구로구 치수과	3,223	2,885	89.5%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7	재난예방 (15-34. 오리로22길31 외 3개소 원형관로보강)	구로구 치수과	1,000	889	88.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18	재난예방 (15-35. 시흥동272-6번지 일원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	금천구 치수과	1,314	1,313	9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19	재난예방 (5-45. 여의나루로 외 4개소 사각형거보수)	영등포구 치수과	1,000	387	38.7%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0	재난예방 (15-37. 여의나루로 외 1개소 사각형거보수)	영등포구 치수과	2,710	2,650	97.8%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1	재난예방 (15-38. 여의대방로9길 외 4개소 사각형거보수)	영등포구 치수과	815	718	88.1%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2	재난예방 (15-39. 디지털로54길 외 2개소 사각형거보수)	영등포구 치수과	442	388	87.8%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3	재난예방 (15-40. 낙성대로23 일대 사각형거보수)	관악구 치수과	2,500	2,50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4	재난예방 (15-41. 쑥고개로133 일대 사각형거보수)	관악구 치수과	1,000	1,00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5	재난예방 (15-42. 방배동852-22~813-4 사각형거보수)	서초구 물관리과	950	611	64.4%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6	재난예방 (15-43. 방배동813-3~774-9 사각형거보수)	서초구 물관리과	1,100	1,099	9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7	재난예방 (15-44. 방배동774-19~750-11 사각형거보수)	서초구 물관리과	2,102	2,102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6.)
28	재난예방 (15-86. 중랑센터제2처리장 유입동 비상펌프 및 조절펌프 교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700	610	87.2%	-준공기한 미도래(2026.4.)
29	재난예방 (15-87. 중랑센터 지하공동구 154kv 케이블보호대설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463	21	4.7%	-준공기한 미도래(2026.8.)
30	재난예방 (15-88. 중랑센터 지하공동구 위험구역 안전관리시스템구축)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550	477	86.8%	-준공기한 미도래(2026.3.)
31	재난예방 (5-50. 난지센터2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 수집기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250	199	15.9%	-준공기한 미도래(2026.2.)
32	재난예방 (5-51. 난지센터 홍제천 차집관로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500	1,388	92.5%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3	재난예방 (15-90. 난지센터 만조천(옥천) U형수로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894	873	97.7%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4	재난예방 (15-91. 난지센터 유입펌프장 조목제진기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800	1,489	82.7%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5	재난예방 (15-92. 난지센터 유입펌프장1처리장 호퍼(4대)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600	1,327	83.0%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6	재난예방 (15-93. 난지센터분뇨처리시설 농축기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700	265	37.8%	-준공기한 미도래(2026.5.)
37	재난예방 (19-3. 한강수상안전을 위한 교량 충돌방지 및 안전성확보)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535	223	41.7%	-준공기한 미도래(2026.2.)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8	재난예방 (19-3. 한강수상안전을 위한 교량 충돌방지 및 안전성확보)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1,605	1,605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3.)
39	재난예방 (8-6. 우기대비 산림재해예방 드론 특별 안전점검)	산지방재과	50	49	97.0%	-준공기한 미도래(2026.2.)
40	재난예방 (10-1. AI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시스템구축)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953	275	28.8%	-준공기한 미도래(2026.6.)
41	재난예방 (10-1. AI기반 재난종합상황정보시스템구축)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2,061	615	29.9%	-준공기한 미도래(2026.6.)
42	재난예방 (10-2. 잠실철교CCTV신규구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611	545	89.2%	-준공기한 미도래(2026.5.)
43	재난예방 (15-8. 2025년 굴착공사장주변 공동조사 특별점검구역)	지하안전과	375	375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3.)
44	재난예방 (7-3.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스마트계측 신기술확대도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51	51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2.)
45	재난예방 (18-4. 정릉천2복개 내진성능보강)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200	1,20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12.)
46	재난예방 (15-69. 마곡2빗물펌프장 노후제어설비 개량)	강서구 물관리과	292	79	26.9%	-준공기한 미도래(2026.3.)
47	재난예방 (15-64. 공릉1빗물펌프장 노후수배전반 교체)	노원구 치수과	500	456	91.2%	-준공기한 미도래(2026.3.)
48	재난예방 (15-60. 장안2빗물펌프장 노후수배전반 개량)	동대문구 치수과	338	259	76.6%	-준공기한 미도래(2026.4.)
49	재난예방 (15-50. 홍제천 일대 기전설비긴급정비)	종로구 치수과	222	161	72.6%	-준공기한 미도래(2026.5.)
50	재난예방 (15-47. 중곡빗물펌프장 증설 기본계획수립관련 물건조사)	광진구 가로경관과	32	32	100.0%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25. 11.), 부지 매입계획 수립('25. 12.) 및 보상계획 공고('25. 12.) 등 감정평가 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납부 시기 미도래
51	재난예방 (5-30. 침수예측정보시스템 하천범람 및 지하차도 침수위험분석 예측모델구축)	치수안전과	2,313	334	14.4%	-준공기한 미도래(2026.3.)
52	재난예방 (15-45. 도시공원을 활용한 치수방재 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치수안전과	500	490	98.0%	-준공기한 미도래(2026.10.)
53	재난예방 (9-24. 홍제천 노후 보강토 옹벽정비)	종로구 치수과	100	88	88.0%	-준공기한 미도래(2026.2.)
54	재난예방 (15-75. 여의천양재IC하부 정비공사)	서초구 물관리과	1,450	779	53.7%	-준공기한 미도래(2026.5.)
55	재난예방 (15-76. 세곡천 석축 및 제방 정비공사)	서초구 물관리과	750	720	96.0%	-준공기한 미도래(2026.5.)
56	응급복구 (12-21. 불광천 집중호우 퇴적토 제거)	마포구 물관리과	500	35	7.1%	-준공기한 미도래(2026.3.)
57	재난예방 (15-58. 중랑천 노후하천시설 정비)	동대문구 치수과	200	20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3.)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58	재난예방 (9-27. 마곡2빗물펌프장 모터펌프정비)	강서구 물관리과	158	42	26.7%	-준공기한 미도래(2026.2.)
59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중구 행정지원과	34	32	94.9%	-준공기한 미도래(2026.1.)
60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성동구 안전관리과	26	24	92.5%	-준공기한 미도래(2026.3.)
61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성북구 교통행정과	41	41	98.8%	-준공기한 미도래(2026.1.)
62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노원구 교통행정과	80	55	68.8%	-준공기한 미도래(2026.2.)
63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은평구 교통행정과	41	38	92.0%	-준공기한 미도래(2026.11.)
64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마포구 교통행정과	30	21	70.0%	-준공기한 미도래(2026.4.)
65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강서구 안전관리과	70	53	76.1%	-준공기한 미도래(2026.4.)
66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금천구 주민안전과	39	18	45.3%	-준공기한 미도래(2026.3.)
67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금천구 교통행정과	51	46	91.0%	-준공기한 미도래(2026.1.)
68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90	90	99.6%	-준공기한 미도래(2026.2.)
69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동작구 도시안전과	50	5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1.)
70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관악구 안전관리과	30	11	35.2%	-준공기한 미도래(2026.2.)
71	재난예방 (18-2.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설치지원)	송파구 공원녹지과	50	48	95.2%	-준공기한 미도래(2026.1.)
72	재난예방 (12-33.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파관리)	종로구 안전도시과	44	44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2.)
73	재난예방 (12-33.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파관리)	중구 생활안전과	22	16	74.5%	-준공기한 미도래(2026.3.)
74	재난예방 (12-33.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파관리)	성동구 안전관리과	22	21	95.0%	-준공기한 미도래(2026.2.)
75	재난예방 (19-2.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 안전관리점검)	중구 생활안전과	26	21	80.4%	-준공기한 미도래(2026.1.)
76	재난예방 (8-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쿨링로드확 대) - 세종대로 쿨링로드 구매설치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284	530	41.3%	-준공기한 미도래(2026.6.)
77	재난예방 (15-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쿨링로드확 대) - 천호역 사거리 쿨링로드 설치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600	482	80.3%	-준공기한 미도래(2026.5.)
78	재난예방 (15-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쿨링로드확 대) - 연신내역 쿨링로드 설치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1,200	1,200	100.0%	-준공기한 미도래(2026.5.)
79	재난예방 (15-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쿨링로드확 대) - 광나루역 쿨링로드 설치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1,494	1,032	69.1%	-준공기한 미도래(2026.6.)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80	재난예방 (15-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쿨링로드확대) - 신도림역 쿨링로드 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600	220	36.6%	-준공기한 미도래(2026.5.)
81	재난예방 (15-2. '25~'26년 겨울철대비 제설제확보)	도로관리과	1,217	1,038	85.3%	-준공기한 미도래(2026.4.)
82	재난예방 (15-2. '25~'26년 겨울철대비 제설제확보)	도로관리과	283	117	41.4%	-준공기한 미도래(2026.4.)
83	재난예방 (15-1. 제설·결빙취약구간 신기술 안전시설 확대설치)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969	1,037	52.7%	-준공기한 미도래(2026.6.)
84	재난예방 (15-1. 제설·결빙취약구간 신기술 안전시설 확대설치)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103	1,856	88.3%	-준공기한 미도래(2026.5.)
85	재난예방 (15-1. 제설·결빙취약구간 신기술 안전시설 확대설치)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395	757	54.2%	-준공기한 미도래(2026.7.)
86	재난예방 (15-1. 제설·결빙취약구간 신기술 안전시설 확대설치)	노원구 토목과	209	179	85.8%	-준공기한 미도래(2026.2.)
87	재난예방 (15-1. 제설·결빙취약구간 신기술 안전시설 확대설치)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091	205	18.7%	-준공기한 미도래(2026.4.)
88	재난예방 (15-5. 중앙차로버스 정류장 보도 열선설치)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70	233	86.4%	-준공기한 미도래(2026.6.)
89	재난예방 (15-5. 중앙차로버스 정류장 보도 열선설치)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30	208	90.5%	-준공기한 미도래(2026.7.)
90	재난예방 (18-3. 도로제설 신기술 현장검증)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2	21	95.0%	-준공기한 미도래(2026.3.)
91	재난예방 (18-3. 도로제설 신기술 현장검증)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2	21	94.3%	-준공기한 미도래(2026.3.)
92	응급복구 (12-28. 본동8-1번지 축대사면 긴급복구공사)	동작구 도시정비1과	97	96	99.1%	-준공기한 미도래(2026.3.)

- 다만, 차년도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음.

바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차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5	84,673	1,115	-	1,288	40,646	-	41,624	84,673	50,108	34,354	-	211
2024	83,382	1,027	-	1,310	31,727	-	49,318	83,382	41,621	40,646	-	1,115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가) 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정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12억 88백만원, 예치금회수 406억 46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16억 2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15백만원을 합한 846억 73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59.2%인 501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감리비로 2억 1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

지 343억 54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17억 6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29억 12백만원과 사용액 501억 8백만원의 차(△ 71억 96백만원)를 합한 345억 6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71억 96백만원을 적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41,761	△7,196	42,912	50,108	34,565 (사고이월 211 포함)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누계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안전·품질 관리를 위한 감리원 증원 및 건설사업관리의 장기계속계약 도입으로 감리비 지출 증가와 더불어 '24년도 동부도로사업소의 미지급 공사비(38억 77백만원) 정산³³⁾ 금액이 반영되면서 당해연도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표]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결산)
수 입 액	40,486	33,119	33,455	41,729	45,429	50,629	42,912
원인자부담금	39,945	32,780	33,032	41,109	44,380	49,319	41,624
이자수입 등	541	339	423	620	1,049	1,310	1,288

33) 202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

구 분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결산)
지 출 액		36,905	31,453	35,219	32,110	40,269	41,621	50,108
도로굴착복구공사	소 계	36,673	30,580	33,396	31,195	39,512	41,200	49,706
	직접복구비	32,333	27,332	29,197	26,204	35,324	36,433	42,962
	사후정비비	2,834	1,731	2,761	3,500	2,755	3,055	3,152
	감리비및부대비	1,506	1,517	1,438	1,491	1,433	1,712	3,592
	기타(잔산운용 등)	232	873	1,823	915	757	421	402
사고이월		-	598	1,080	1,382	1,027	1,115	211
증 감		증 3,581	증 1,069	감 2,248	증 9,319	증 5,516	증 8,919	감 6,292
연도말 잔액(예치금)		18,071	19,140	16,892	26,211	31,727	40,646	34,354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75억 81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245억 72백만원이 증가한 621억 53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현액 대비 79.2%에 해당하는 501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11백만원을 이월시킴([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7,581	62,153	1,115	63,268	50,108	211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지출 497억 1백만원이 발생했으며,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에 4억 2백만원, 기본경비 5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50,108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연구용역비	49,701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402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5

- 금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월은 1건 2억 11백만원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는데,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참조).

[표]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1건		211	211 (100%)	
1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2권역)	도로관리과	211	211 (100%)	◦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5.4. 계약체 결 및 진행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 ('26.6.)에 따른 사고이월

[붙 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재난안전실)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 관 실 국
3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처리 운용 부적정	재무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난안전실,
34	예산 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편성 신뢰성 제고	재난안전실
35	사고이월 예산 변경 지양 및 관리 철저	재난안전실
36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 불용액 과다	재난안전실
37	기 지출 예산 이월 처리에 따른 불용 발생	재난안전실
38	예비비 집행 및 소송관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재난안전실
3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반복적 예산 이월 개선 필요	재난안전실

03.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처리 운용 부적정

[세입 결산 / 재무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대변인 및 재난안전실의 세입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 과정에서 현년도 세입에서 직접 반환 처리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등 세입처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됨.

우선 대변인의 세입결산에서는 기타이자수입 실제수납액이 △10,000원으로 나타남.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도 출장여비 오지급 건(1건, 10,000원)의 2024년도 반납 부과 과정에서 세목 적용 오류가 발생하였고, 2025년도에 오류 정정을 위하여 기존 수납액을 환급한 후 적정 세목으로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마이너스 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세입결산에서는 변상금 실제수납액이 △2,792,741,830원으로 나타남. 이는 송파구청이 관리 중인 시도로에 대해 롯데물산(주)에 부과한 변상금 4,827백만원이 처분취소소송 결과 취소됨에 따라, 서울시가 기존 수납 변상금 및 환급이자 185백만원을 포함한 총 5,011백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해당 반환금은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집행하지 않고, 「지방회계법」 제28조 제1항의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현년도 세입에서 직접 반환 처리한 후 부족분을 마이너스 세입으로 결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나. 시정권고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28조의 과오납금 반환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발생한 과오납 반환을 전제로 하는 취지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28조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과오납 반환은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우선 반환할 수 있으나, 과년도 세입으로 확정된 과오납금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802-03 기타 반환금 등’ 통계목으로 편성,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802-03 기타반환금 등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반환금 등
(다만, 「지방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수입금에서 직접 반환하는 경우는 제외)

이러한 사례는 실제 마이너스 세입결산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 세입·세출 총괄 부서에서는 과년도 과오납 반환 처리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과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부서별 처리방식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4. 예산 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편성 신뢰성 제고

[예산 변경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재난안전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간 예산변경 건수가 총 17건에 이르는 등 예산의 목간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예산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유형의 변경이 반복될 경우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서와 실제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여 예산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재난안전실 예산변경 내역(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 이전)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감액	증액	
1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450,000	145,000	-	2025-04-29
		401-02 감리비	50,000	-	145,000	
2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300,000	200,000	-	2025-07-09
		401-02 감리비	200,000	-	200,000	
3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800,000	100,000	-	2025-03-17
		401-02 감리비	-	-	100,000	
4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13,692,300	448,200	-	2025-06-16
		401-02 감리비	730,700	-	448,200	
5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1,050,000	107,630	0	2025-03-17
		401-02 감리비	50,000	0	107,630	
6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10,942,370	82,500	-	2025-05-13
		401-02 감리비	157,630	-	82,500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 이전)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감액	증액	
7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5,495,000	21,340	-	2025-04-17
		401-02 감리비	900,000	-	21,340	
8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27,390,000	247,560	-	2025-07-09
		401-02 감리비	1,720,000	-	247,560	

나. 시정권고

예산의 목간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변경은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로사업 감리비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 물가 변동 요인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통계목 변경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5. 사고이월 예산 변경 지양 및 관리 철저

[성동교 확장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성동교 확장사업에서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된 시설비 예산현액 일부를 2025년도 예산변경을 통해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 사고이월은 당초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특정 사업비를 동일 사업의 계속 집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인 만큼, 이월 당시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엄격히 집행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실 사고이월 예산변경 내역(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변경 이전)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감액	증액	
성동교 확장	401-01 시설비	1,899,993	487,900	-	2025-12-04
	401-02 감리비	100,000	-	487,900	

사고이월 예산의 변경 사용 경위를 살펴보면, 성동교 확장 공사를 위하여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사고이월된 감리비 100백만원을 2025년 상반기 중 모두 집행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설계 추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또한 함께 연장되어 추가 감리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추가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부족한 감리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 일부인 488백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시정권고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 보완, 공정 변경,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감리기간과 감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 등에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시설비로 사고이월된 예산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고이월 제도의 엄격한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지난연도 사고이월 집행액 관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이 당해연도 예산변경을 통한 증가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고, 기존 감리비 사고이월 집행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됨. 사고이월 예산 집행과 예산변경 내역은 결산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실제 집행 경위와 변경 내역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6.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 불용액 과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전기분야 설계용역은 2024회계연도 예산 134백만원을 편성하여 계약 및 착공(2024.11.)하였으나, 2025년 9월 용역이 중지되면서 기투입된 용역비 26백만원만 정산하고 잔액 108백만원은 불용 처리됨. 또한 청사이전 사업 전체 예산현액 약 19억원 중 약 8억원만 집행되고 약 17억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사업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이후 발생하는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선행사업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정체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개통(2028. 상반기) 이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청사이전 관련 설계용역 역시 중지 및 정산 처리된 것임.

이와 같은 불용 발생은 선행사업 추진 지연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연계사업 간 추진 일정과 사업 확정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사업의 설계용역을 선제적으로 발주, 매몰비용이 발생한 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시정권고

사고이월 및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선행사업과 후속사업 간의 연계성이 높은 만큼, 선행사업의 추진 일정과 사업 확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후속 사업의 설계용역 및 예산 집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중지된 설계용역의 성과물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재추진 시 재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복 설계 및 추가 용역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7. 기 지출 예산 이월 처리에 따른 불용 발생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한 ‘남산1호터널(구)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관수교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사업비 352백만원이 2024년에서 2025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2024년 12월 30일 이호조를 통해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됨.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이월 대상금액 제출 이후 용역사로부터 기성금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2024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하였음. 그러나 사고이월 신청금액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출내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미 지출된 금액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잘못 관리되었고,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는 집행할 예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예산으로 존치되었다가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나. 시정권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지출이 차년도까지 이월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따라서 이미 전년도에 지출이 완료된 예산을 사고이월 대상으로 관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말 결산 및 이월 확정 과정에서 지출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이월액 확정 과정에서 실제 지출 완료 여부와 사고이월 대상금액 간의 대조·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이 사고이월 예산으로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8. 예비비 집행 및 소송관리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비비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재난안전실은 2025회계연도 중 강변북로 확장 설계보상금 159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405억 원,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배상금 155억 원 등 총 710억 원 규모의 배상금 및 반환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세부적인 집행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강변북로(양화~원효) 확장사업 설계보상금의 경우,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이후 2024년 11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사업 취소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설계보상비 159억 원이 예비비로 지급됨. 소관부서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점과 사업 취소 확정 시점('24.11.) 간 차이, 보상액 미확정 등을 이유로 사전 예산편성이 어려웠고, 지급 지연 시 이자 및 추가 소송도 가능하여 긴급한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의 경우도 2021년부터 장기간 소송이 진행, 1심·2심·3심 판결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 결과와 지급 시점의 예측이 어려웠으며, 이자 부담 등으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하여 예비비 405억원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배상금 역시 소송 진행 중 연체가산금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고, 1심 판결 직후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사용을 위하여 예비비 155억원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나. 시정권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재원으로 운용되어야 함. 예비비가 대규모 소송 및 배상금 지급에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간 진행 중인 대규모 소송과 같이 일정 수준의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전 편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패소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소송가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및 법정이자 예상액을 일정 부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난안전실은 장기간 진행되는 고액 소송이 많은 만큼,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과 대응 논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별 ‘책임담당 제도’를 두어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사건 이력, 쟁점, 판결 경과 및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패소 및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9.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반복적 예산 이월 개선 필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2025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D=A-B-C)
					계(C)	명사이월	사고이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35,048	3,694	38,743	26,199	12,543	0	12,543	0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집행 지연을 넘어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물 발생, 주민 협의, 관계기관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여건과 추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대규모 이월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나. 시정권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장기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관계기관 협의, 공정 지연 가능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